

머 리 말

2000년대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열기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2000년에 6천억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수시장규모, 저렴한 인건비 등 중국이 투자 진출지역으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1997년 상반기 현재 총 3,196건, 31억달러에 달하여 10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진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중국투자진출 열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산기지와 내수시장 진출 거점 확보라는 투자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사회제도, 법규 및 관행의 벽에 부딪혀 좌초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투자를 왜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전통과 제도로 인해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던 우리기업들에게 생각지 못한 많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지난 10년간 중국투자를 한 선발 진출기업들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KOTRA는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중국투자의 제반절차와 지난 10년간 우리기업들이 중국투자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과 외국기업의 사례를 엮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책이 중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투자의 각종 절차와 법규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중국의 경영현실에 대해 좀 더 생생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2월

중국실장 안재건

제1장 중국투자 성공을 위한 10가지 포인트

1. 중국사회를 먼저 이해해야

가. 뿌리 깊은 사회주의적 전통

북경거리를 걷다보면 벤츠와 같은 고급차가 우마차와 같이 거리를 달리는 모습과 서민들의 주거가옥인 허름한 平房이 밀집된 胡同(뒷골목)과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병존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천안문에는 모택동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의 기념관이 있는 반면 그 바로 앞에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성업 중이다. 이러한 혼재된 모습이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새롭거나 이상하지 않은 익숙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국가운영의 기본노선으로 추진한 지난 10년동안 연간 10%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CIA가 미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GDP는 구매력 평가기준 20조40억달러로 전세계 구매력의 20%를 차지, 미국 11%, 일본 5%를 훨씬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CIA뿐 아니라 중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경제의 강자로 부상하리라는 예측이 많은 세계 유수 경제기관과 연구소로부터 나오고 있다.

각종 통계 수치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미래에 대한 핑크빛 전망과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 주요도시를 방문할 때에 보게되는 활기찬 현대적 도시의 발전하는 모습은 외국 투자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여 짧은 기간동안 중국은 세계 제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고, 40여년간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주의적 전통과, 특히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를 토양으로 기업을 영위하던 외국 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기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회주의 기업은 사회보장 단위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기업이 국민들의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과 주택, 의료, 육아 및 퇴직자의 노후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최근 외국투자기업과 향진기업 등이 이윤 추구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국유기업 또한 개혁개방의 여파로 사회보장적 기능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사회보장 기능이 강하고, 이 때문에 많은 한계기업이 국민의 직업보장이라는 명제하에 정리되지 못하여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회사내의 노사관계 설정, 현지 중국 기업과의 거래관계 형성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음은 물론, 특히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합작 쌍방간의 이러한 기업여건과 이해 차이가 합작기업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합작기업에서 이윤이 나지 않아도 중국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그 자체로 일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외국투자자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중국 투자에서 문제는 중국의 경영여건이 우리와 다르다는 그 자체보다는 투자 기업들이 중국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적 경영 여건은 대처하기에 따라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투자기업의 성공, 실패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례 1) 중국의 기업은 小社會

자전거 생산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S기업이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합작투자 상담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상담은 중국측 상담파트너인 C사에서 진행되었다. S사 일행은 이 중국 회사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다른 중국회사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중국 회사는 몇 만평 규모의 대단위 대지 위에, 종업원 또한 수천명이였다. 회사내에는 공장과 사무소 이외에도, 직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

파트와, 병원,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내 호텔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여행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관계 있는 인사들의 투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S사 일행도 중국측의 요청으로 출장 기간동안 줄곳 이곳에 투숙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국유기업을 小社會라고 한다. 다른 중국회사를 방문 합작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小社會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 분출하는 배금주의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는 중국의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실리를 중시한다. 40여년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억눌러 왔던 이러한 실리중시 사상은 개혁 개방과 함께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초기의 모든 국가에서 겪게 되는, 가치관의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精神文明” 운동 전개 등 현 중국 지도부가 부정 부패 추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분출하는 배금주의가 적절한 게임의 틀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법보다 우선하는 짝시(關係)

“拉關係 占便宜”이는 말이 있다. 관계를 동원해서 많은 혜택을 본 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물론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은 法治보다 人治의 국가였다.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기업경영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조항이 이제 막 제정되어 가고 있고,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법률 수요가 폭발하는 추세로 일반의 법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달라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법보다는 힘있는 사람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본적인 법률 체계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점이 있다. 자본주의 법원은 3권분립의 기초하에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의 법원은 판결시 당과 인민의 이익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여서 외국기업의 경우 불리한 법 집행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례 2) 중국측 파트너의 불법행위에도 중국 정부 조치는 미온적

한중 합자기업인 K사(한국 75% 중국측 25%)는 생산이 정상화되고 이윤이 발생하자 중국측에서 불법문서를 작성 한국측을 몰아내고 회사를 강점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중국측에 계약중지를 통보하고 시정부에 중지 신청을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시정부의 계약중지 승인 후에도 중국측의 회사 강점은 계속되었으며 청산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를 미루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끄는 한편, 불법적으로 합자기업의 외환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침탈하였다. 또한 중국측은 일방적으로 생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부에 대해 합자기업의 분쟁을 당사자끼리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으며, 동시에 계약을 중지하고 청산을 하겠다는 허위계획을 제출하였다. 시정부와 법원은 중국측의 계획에 동의하여 시정부는 계약중지 수리통보를 철회하고 법원은 중국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를 허가하였다. 한국측은 다시한번 시정부에 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중지시키고 즉시 청산토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의 어느 기관도 직접 해결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 중국측의 회사 불법 강점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한국측은 현지 한국 투자기업 협의회, 중국한국상회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응하여 결국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었으나 그동안 입은 경영상의 피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으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자본의 50%이상 여유 자금 확보되어야

회사를 설립하면서 철저한 사전 조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치 못했던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자금 동원능력이 예상 투자 금액보다 부족함에도 일단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추가자금 수요 발생 요인이 많고 손익분기점이 예정기간을 훨씬 넘기기 쉬운 중국투자에 있어서 충분한 여유자금 없이 투자를 추진할 경우 기존 투자자금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 쉽다.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으면 일단 투자를 보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예상을 넘는 투자자금과 운전자금 부족으로 투자에 어려움

L사는 통계상에 나타난 중국의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에 투자할 경우 짧은 기간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분치 못한 자금 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투자를 감행하였다. 북경 교외의 한 허름한 건물을 수리하여 공장으로 쓰고, 이 회사가 서울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가져와서 생산을 하면 그리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허가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불거져 나왔다.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고 비공식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설비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전기 문제였다. 이 회사 공장건물은 농촌에 위치하여 전기사용에 제한이 많았고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비용으로 별도의 전기 배선을 탄 곳으로부터 끌고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예상 투자자본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본사의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 막상 생산 단계에서는 운전자금 문제로 공장 운영이 지지부진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자기 자본 확보 후에도 은행 활용 가능성 타진 필요

일부 지방에서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30%까지 융자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 한푼도 대출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중국에서의 은행 대출이 불확실하여 투자자본에 현지 자금 지원을 고려해서는 안되지만, 일단 자기 자본 확보후에는 자금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현지에서의 자금 대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흔히 중국투자시 가능한 자금회수가 빠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한다. 투자 리스크가 높고, 전반적인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업종의 투자자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무의미하다. 현지은행을 통한 자금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금여력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상으로는 외자기업도 합자나 독자나 대출에 제한이 없고 대출이율 또한 중국기업과 같은 조건이다. 그러나, 중국의 거시조절정책 영향 등으로 대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금융지원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보다는 인간 關係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금리에 따라 융자되는 시장성 자금보다는 정책성 자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은행 자금을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중국의 은행이 일단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국적에 크게 개의치 않는 점도 있다. 우선 투자자 자신이 현지 실정에 정통하고 합작파트너 등 현지의 關係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Feasibility- Study는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가. 사전 현장 확인과 조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통계와 전망치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반면, 일부 기업의 투자사례는 중국에서의 투자가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여건이 우리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중국에 투자할 경우, 자료상에 나타난 숫자를 과신하여 투자를 결정할 때 실패 가능성이 높다. 확신이 설 때까지 현장 확인과 조사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례 4) 회사대표가 직접 장기간 중국 현장 확인 후 투자 결정

T사는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여건 조사시 실무진들이 수차례 현지 출장토록 하였으나, 출장자들마다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즉 광활한 시장 잠재력과 연관산업 발달로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투자에 절대 부정적이라는 의견으로 양립하였다.

이에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약 1달간 중국 전역의 관련 공장을 방문 투자지역, 투자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 투자조사 단계의 이러한 면밀한 현장

확인으로 T사는 북경 시정부가 북경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가장 모범적인 투자 사례의 하나로 꼽는 성공적인 한국계 투자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나. 투자전 임가공 진출 경험도 바람직

투자 분야 및 업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투자전 중국에서의 임가공 생산을 통해 현지 관행을 파악하고 인맥형성 등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간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중국 전문인력들을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투자에 중요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 먼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다. 리허설 개념에 의한 각 단계별 상황 점검 필요

사회 여건이 다른 외국에 투자를 할 경우 각 투자 단계별 리허설 개념에 의한 세심한 사전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소홀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은 전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허가를 받고, 공장부지를 선정.임차하고, 설비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구매하고, 전기,용수설비등 투자 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의 사정은 어떻게 이를 사용 또는 해결하는데 특별한 제한이나 요건이 필요한지를 하나 하나 점검해야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의 출현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 수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라. 합작시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파악

중국투자에서 실패한 기업중 많은 경우가 합작파트너와의 문제발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합작파트너가 현지에서의 꼭시 활용, 내수판매 활로개척 등에서

경영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사례 2)와 같이 한국투자자가 75%의 지분을 확보하였음에도 중국측이 경영권을 강점하는 극단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작파트너의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관계설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합작 파트너 선정시 세심한 주의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의 확보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

4. 입지선정이 투자 성공 여부의 시작

가. 지역별 투자여건의 현격한 차이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중국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이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정부가 내륙 경제개발을 위해 내륙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내륙에 투자하므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와 선점의 효과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낙후된 사회 기반시설과 내륙운송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도 산재하고 있어, 내륙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 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지를 선택할 때 투자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연안 지역 또는 한국기업이 많이 투자한 지역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내륙 지역과 우리기업의 투자가 많지 않은 지역도 투자 고려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의 품목과 여건상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 5) 유리한 위치선정으로 투자 성공

1988년 한중교류가 막 시작되어 중국투자, 환경조사 등이 용이치 않던 시기에 중국에 투자한 J사는 투자지 선정시 조선족이 많은 동북지역과 산둥반도 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수출지향적인 동사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廈門市 호리공업구에 투자하게 되었다.

당시 이 곳은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직항로 개설이 아직도 요원한 때였으므로 주로 홍콩을 경유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반입해 오고 생산된 제품을 반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물

론 당시에는 이러한 홍콩에 인접한 廈門조차도 홍콩-廈門간의 운송비용이 한국-홍콩간의 운송비용보다 월등히 비싼 실정이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대외 경제 개방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지역이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변해 임대료가 폭등하여 결과적으로는 후발 진출업체에 비해 J사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사례 6) 중국 내륙시장 조기 진출로 도약 발판 구축

S사는 사천성 成都에서 터미널 운영과 여객운수업을 하는 중국 사천성 최초의 한국계 합자기업이다. 성도와 중경은 사천성 인구의 80%가 몰려 있는 중국 3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95년 7월 완성된 成渝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수업 및 터미널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성도시가 물류중심지로서 향후 유통업 진출 가능성이 커 외국투자가 활발치 않은 내륙지역에 투자를 감행하게 되었다. 투자 1년만에 흑자 경영을 구현하였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터미널 사업의 모델로 지정될 정도로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사천성 정부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화물 터미널 합자사업을 제안받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에게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광고업, 여행업 등에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원자재 조달문제 신중히 검토

원자재 조달문제는 투자기업들이 우선 고려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여건 고려시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KOTRA 대련무역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북 3성 한국 투자기업의 약 50% 이상이 원자재를 한국 및 제3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목재, 석재 등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해서 쓰지만, 한국기업 집중 투자 품목인 신발, 봉제, 완구, 복장 등의 원,부자재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중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로는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어려우며, 가끔 좋은 품질의 원료가 있긴 하나, 이는 가격이 수입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제품도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파는 관행과, 국가 관리품목일 경우 일반제품 구매와는 다른 가격 및 공급체계 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례 7) 원자재 구매 문제로 경영 애로

악기제조 S사는 생산제품이 목재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으로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목재 생산이 많은 흑룡강성으로 투자 진출하였으나 흑룡강성이 목재의 생산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목재 구매가 어려워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려고 했으나 중국측은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목재를 전년도 11월과 다음해 3월 사이에 모두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그나마 계약된 물량조차도 기한내에 인도해 주지않아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중국측 합작선이 목재를 생산하는 林業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 물량을 현지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가격 또한 상당히 높았다. 또한 중국은 중요물자를 1,2,3 등급으로 분류하여 가격과 공급물량을 국가에서 조절하고 있으며, 목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1급 물자로 가격과 공급물량 책정에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투자시 소요되는 주요 원자재가 국가관리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례 8) 일괄 생산 체제 구축으로 투자 성공

우리나라 가죽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C사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 수요와 생산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중국에 투자하면서 원피 가공공장, 바클, 장식류 생산공장, 남성용 지갑 벨트 생산공장과 여성용 지갑, 핸드백, 가방 생산공장 등 4개 법인 회사를 동시에 설립하였다. 이는 관련 산업부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부자재 공급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의 질을 일정 수준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지 생산제품의 품질은 한국의 90%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현지 투자 2년째에 매

출신장률이 전년대비 360% 이상 증가하였고, 약 300억원 규모의 수출을 하게 되었다.

5. 적절한 진출시기와 분야선정

중국의 지역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진출시기를 판단하는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례 6)의 경우와 비교하여 북경-천진간 여객운수 사업이 이미 다른 한국기업들간의 경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동사는 내륙으로 진출하여 선점의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투자에 성공한 예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중국이 각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점이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면도 있다.

(사례 9) 중국 조기 진출로 성공한 영구시의 H사

세계 화장품 수요의 80%를 공급하던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날로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한 제조 원가고로 산업자체가 한계에 부딪혀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반면, 대만의 동종업체는 중국에 진출하여 원가절감 등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H사는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중국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당시는 중국 여행이 천안문 사태로 자유롭지 못하여 투자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항상 불안한 심정이였다. 이러한 시기에 진출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현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 유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연간 약 40백만개 정도의 화장술을 생산하여 세계 유수의 화장품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단독투자가 안정적 경영에 유리

투자 항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기업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단독투자가 합작투자보다 절대 유리하다는 것은 (사례 2)의 중국측 회사 강점 사례 등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 투자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0) 합작투자에서 실질적인 단독 운영형태로 전환

합작투자기업인 A사는 중국측과의 심각한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다. 손익분기점 돌파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등 투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사소한 의견 차이가 나중에는 심각한 감정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양측은 課長 하나를 선임하는데도 상대가 추천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비토하고, 중국측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는 상황에도 고의적으로 대출신청을 방해하는 등 경영이 안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측은 중국측을 설득하여 연간 일정 금액을 중국측에 보장하는 조건으로 중국측의 경영 간여를 막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경영 정상화를 기할 수 있었다.

7.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

중국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전반적인 가격제도 자체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특히 토지 사용권에 대한 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11) 중국투자의 두부공장 論

중국투자에 성공한 기업중에 하나로 꼽히는 한국계 합작기업 T사의 회장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중국에서 부동산투자를 하고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투자의욕을 자극하는 발전성이 아주 좋은 곳에 두부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자. 우리 기업은 먼저 이땅의 구입(중국의 경우 사용권

구입)을 서두르고 두부공장측과 구입 상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측은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를 하니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사용권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려 버리기가 십중팔구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건물 신축허가 취득 등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된다. 이보다 현실적인 중국적 접근 방법은, 먼저 중국측과 두부공장 합작을 추진하여 이 두부공장의 지분을 확보한다. 이 후 적당한 시기에 두부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두부공장 자리에 공장의 본사건물 명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실질적으로는 임대 등을 통해 본래 목적했던 부동산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지 사용권 구입과, 건축 허가 획득 등에서 용이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지 부동산 투자에서 뿐 아니라, 중국 투자의 전반에서 중국 현실에 맞춘 우회 투자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8. 현지 법규에 충실한 투자

중국사람들은 “上有政策 下有對策 (국가에 정책과 법이 있으면 이를 피해갈 대책도 있다)”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혁기에 있다보니 法과 原則보다는 變通과 關係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 투자를 하다 보면 자의건 타의건 변통과 인맥을 동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을 하도록 유혹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통과 위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기업 자신의 족쇄가 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투자를 철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칙에 입각한 투자만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9.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북경의 한국기업인들은 중국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같이 많은 자본과 중국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OWNER가 현지에서 직접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OWNER가 현지에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체제를 구

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도 중국 현지의 경영을 현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역본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 12) 중국 투자는 최고경영자 책임하에
(현지 투자기업 사장 기고문)

중국 정부의 투자관련 부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할 때마다 중국 여건에 대한 외국 투자기업들의 몰이해함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투자기업 최고 경영의사 결정권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 투자는 OWNER만의 고유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패가 좌우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중국의 투자 및 경영 여건은 우리나라나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업여건이 법률적인 요건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경영 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중국은 사회체제가 다르고 이에 따른 기업 경영의 기본개념 자체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간 관리자가 현지 투자 책임자로 있으면서 복잡다단한 상황을 한국에 있는 본사에 설명, 이해시키기에는 중국의 여건이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다. OWNER만이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국을 기준으로 하거나 시의적절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것이 투자 사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 하는 소극적인 측면 이외에 현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0. 노사 관리에 특히 유의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평등에 대한 개념이 강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복종을 강요하기 보다는 적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상여금 등 제도적인 유인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다. 중국이 아직 관료주의가 심하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해지역의 노동국 등 관련기관과 평소 유대관계를 다져 놓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지의 문화배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행할 수 있다. 노무관리에 관한 한 아무리

합리적인 규정이나 정책도 현지 문화와 배치되면 시행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례 13) 대화 부재로 인한 분규발생 사례

수주가 밀려들어 매우 바쁘게 공장을 가동하던 대만계 중국 투자기업 M사는 갑작스런 직원들의 집단농성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노사간의 대화 창구 부재로 인한 오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직원들은 회사측 300元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의 급여는 256元이고, 3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무계약서에 최저 250元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만 하였지 300元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다. 북경시 노무당국이 320元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는데 회사측이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을,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고 잘못 알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월 후 급여 인상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였으나 직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회사는 평소 현지 정부기관과 돈독한 유대를 쌓아왔고 이번사태에 정부당국도 다소의 책임이 있던 터라, 북경시 노동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동자를 해고 조치하고 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사태가 직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집단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노사를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건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회사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채택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제2장 우리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1. KOTRA의 투자정보 및 현지상담 지원

가. 100개국 투자D/B 통해 정보제공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예정지역의 정치안정성,외자정책,경제사정,금융사정,세제,영업 및 노동관련법규,사회사정,사회간접자본,생활여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막연히 알고 있던 현지의 투자 여건의 실제 모습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확대되면서 여러기관에서 현지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각종 자료가 발간되고 있으며 투자상담도 하고 있다.

<주요 정보제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실(551- 4181, 4314/7)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과(759- 580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센터(784- 1021)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부(769- 6842/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785- 1781)
- 대한상공회의소(757- 075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551- 2464)
- 산업연구원(962- 6211/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제부(508- 8871)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5년도에 중국을 포함한 100개국의 투자환경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투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 PC통신을

통해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전체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41개 주요 성시 정보를 수록하여 방대한 중국지역의 지역별 투자여건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PC통신 이용 업체는 KOTRA-NET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투자데이터베이스 내용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정치,행정,외교 경제동향 대외거래 상거래정보 우리나라와의 관계 비자,여행,문화,관습 투자제도 금융제도 노동 기업형태 조세제도 사회간접자본 참고사항	인구,기후,근무시간,화폐단위 등 기초정보 경제적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 경제,산업동향 등 경제분야에 관련된 기초정보 무역현황,무역장벽 등 무역관련 정보 시장특성,유통구조 등 현지 시장진출 필요정보 정치,외교관계,수출입관계 등 현지 출장 및 현지인과 교제시 참고사항 투자우대제도 등 투자와 직접 관련된 정보 현지 자금조달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현지인 채용,해고,노동조합 등 노사관계 정보 현지 투자기업 유형 선택시 유용한 정보 현지 기업활동시 조세에 대한 정보 전력,통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정보 현지체제시 생활여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나. 무역관을 통한 투자상담 및 유관기관 면담 주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관심이 매우 높은 18개 지역을 투자안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북경, 대련, 상해 무역관이 투자안내센터로서 현지 투자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주, 성도,청도, 무한 등 중국내 7개무역관과 홍콩무역관을 통하여 투자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급변하는 투자환경의 변화, 관련법률 정보 등을 수집하여 우리업체에 전파하고 있으며 중국에 투자차 방문하는 기업들에게 현지투자환경 및 투자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현지 투자를 결정하기전 무역관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방문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적절한 파트너를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현지업체 및 관련기관들과 상담 및 면담도 주선하고 있으므로 본사에 이를 사전에 요청하고 현지를 방문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편하다.

2.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및 높은 금융지원

가. 해외투자 자유화로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

8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부족한 외화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체계하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았으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자원개발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투자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86년 무역수지 흑자실현을 계기로 87년 이후 해외투자신고제의 도입, 부동산 투자 허용 및 투자요건 완화 등 일련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91년 12월의 외환관리법상의 해외투자 관리체제가 종전의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의 틀에서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해외투자의 실질적 완전자유가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의 경우 무역마찰과 첨단기술 습득의 필요성, 국내기업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유화에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되었다. 95년 10월에는 투자제한 업종을 14개에서 부동산 3개업종으로 줄이는 등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의 폭을 한층 넓혀 주었고, 96년 6월 부터는 투자제한 업종을 철폐하게 되었다.

96년 6월1일부로 시행된 해외부동산사업 자유화조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분양, 골프장 운영 등 3가지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 제한 업종이 폐지되고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 되어 한국은행 본점에 허가 및 신고를 하면된다. 그러나, 사업외의 용도로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고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해외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자산 변동을 매년 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97년 8월1일부터는 모든 해외투자를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제도로 전환 완전자유화 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및 허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해외투자와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신고수리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해외투자의 경우 그 해외투자의 결과가 본사의 경영은 물론 채권자,소액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예외적으로 투자금액이 5천만불을 초과하는 투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본사의 규모에 비하여 과대한 해외투자 : 해외 총투자 누계액(출자액 + 시설투자용 지급보증액)이 모기업 자본금과 자기자본의 1/2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되었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한 이후 5년 이상 적자를 보고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나. 투자자금의 90%까지 융자가능

1) 한국수출입은행 및 외국환 은행 등이 융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는 금융지원, 세제지원, 해외투자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해당국의 투자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간의 협정을 통한 투자위험의 감소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지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 지원에서 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금융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환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더불어서 자금지원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은 90년의 1,400억원을 기점으로 하여 93년까지 1,000억원 가량을 유지하다가 94년에는 2,400억원, 95년의 4,000억원의 대출을 기록하여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은 법인인 경우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담보의 제공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이사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은 신용대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 투.융자금 대출은 대상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일반 외국환은행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경제협력성이 인정되고, 사업목적의 달성전망이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한다.

수출입은행이나 일반외국환은행이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지원대출을 하고 있다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수한 대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지원내역을 보면 90년의 238억원, 94년의 1,028억원, 95년의 1,48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에는 대한광업공사와 대한석유개발공사, 산림청의 금융지원이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자금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원기관	자금종류	지 원 내 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한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금리 (둘중 차주가 선택)	변동금리 국내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이 있을시 : *LIBOR + 0.5% 물적담보가 있을시 : LIBOR+0.7% 신용대출인 경우 : LIBOR+1 1.25%
		기간	10년 이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지원기관	자금종류	지 원 내 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담보 (국내 담보)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서 부동산, 국.공채등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 단, 수출입은행 신용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이 가능함 가부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함
		이자징수 방법	계약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이자지급 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후취
		원금상환 방법	연 1회이상 정기분할 상환
	대외협력기금 (해외투, 융자 금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 력 투자사업)	한도	소요자금의 60% 이내
		금리	연 5 ~ 6% 범위내
		기간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담보	국내 또는 국외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서 등
		이자징수 방법	매 1년 마다 후취
		원금상환 방법	연 1회 정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현지법인 직접대출제도	한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범위내에서 대출
		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운영자금 : 3년 이내 -합산 : 10년 이내
		담보	원칙적으로 국내담보의 취득이나 신 용있는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 장, 지급보증서 단, 신용상태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을 보아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신용대출이 가능
		기타조건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함

지원기관	자금종류	지원내용	
외국환 은행	외화대출	대상자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국내기업(거주자)
		대출종류	외화어음대출, 외화증서 대출
		한도	70%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금리	LIBOR + 2.0%내외
		대출기간	10년 이내
		담보	국내담보
		원금상환	연 2-4회 이상 균등분할 상환
		이자징수	3개월 마다 후취
대한광업 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기금(석유이외 주요광물사업)	한도	소요자금의 80% 이내
		금리	연 5%
		기간	15년 이내 (3년 거치 4년 상환이 일반적)
한국석유 개발공사	석유개발기금	한도	소요자금의 70%이내
		금리	연 6%
		기간	18년 이내
산림청	해외조림사업	한도	소요자금의 70% 이내
		금리	연 3%
		기간	10년(숙성수), 15년 (장기수) 이내

* CIRR : OECD협약상 참고금리로 각국마다 상이함. 미달러의 경우
6 7%선.

* LIBOR : 런던소재 국제금융기관간의 적용금리로서 보통 5 6%선
(변동폭 3 8%)

해외금융 지원의 대상 및 요건

자금종류	절 차	지원대상 및 요건	
외 화 대 출 (외국환 은행)		해외투자자금 (역내 대출)	-외화증권 취득자금 - 현지법인의 신설,기설립 법인의 인수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자금 -외화대부채권 취득자금(융자자금) -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의 대부,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에 대한 대부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1년이상으로 융자하기 위한 자금
		현지법인 사업 자금 지원 (역외 대출)	-국내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시설투자 또는 현지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출입 은행)	1.구두상담 -대출적격성 -대출조건 2.융자상담 -계약체결이에 융 자 대 상 이 되는지 확인 3.대출승인 -계약체결 후 관 계 기 관 의 인허가를 얻 은 후 최종 적인 대출 승 인절차 수행	해외투자자금 대출	-국내법인이 현지법인 출자하기위한 필요자금 -국내기업이 출자하고자 하는 현지법인의 합작투자자가 출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국내기업이 출자한 현지법인의 현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기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이 그사업설비의 신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원칙적으로 소요자재의 대부분이 국내 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충당될경우 지원 *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영위이므로 해외지사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대출승인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국내투자자 및 합
 작 투자자의 개요
 및 신용평가에 대
 한자료
 -관련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
 의 인,허가서
 -지급보증서 발급
 약속서
 -신용보증승인 확인
 서
 -소요자금 산출내역
 서

자금종류	심사내용	지원요건 및 대상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 성격상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일반금융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협력성이 인정되고, 사업목적 달성의 전망이 있는 사업 - 대한민국 국민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개도국에 출자하거나 용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업, 수산업, 관광업과 같은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사업 또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
해외현지법인앞 직접대출제도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현지법인이 시설확장 또는 추가운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해외현지법인 앞으로 직접 용자하기 위한 해외사업자금 대출제도 -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

○ 해외투자 손실준비금 적립제도(조세감면 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사업자가 손실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토록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자는 투자금액의 20%까지를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동 적립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적립후 해외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차부터 분할하여 이익금으로 산입한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법인세법 24조 3항)

해외투자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동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

$$\text{공제금액} = \text{법인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액}}$$

○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조세감면규제법 28조)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자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외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 만큼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세액공제 및 공제율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30조)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자원보유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한 경우 면세받은 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세하여 주는 제도이다.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는 농수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이다.

3) 45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부터 해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4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 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자유로운 투자원본 및 과실송금의 보장, 투자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이다.

* 투자보장 협정체결국가 : 45개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튀니지, 영국, 프랑스, 스리랑카, 세네갈, 덴마크,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폴란드, 러시아, 몽골,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베트남, 리투아니아,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스페인, 루마니아, 체코, 그리스, 타지키스탄, 핀란드, 인도, 자이레,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공, 포르투갈, 스웨덴, 브라질, 이집트, 볼리비아, 라오스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47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국가 : 47개국

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터키,필리핀,파키스탄,중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독일,영국,덴마크,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튀니지,헝가리,아일랜드,폴란드,이탈리아,루마니아,스페인,체코,러시아,불가리아,포르투갈,그리스,멕시코,피지,남아공,뉴질랜드,이집트,미국,호주,브라질,캐나다

제3장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1.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合資投資, 合作投資, 獨自投資, 合作開發, 合作生產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작개발과 합작생산이 합작투자의 한 유형으로 볼 때 외국인의 중국투자 방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이 三資企業이라는 말로 통칭되기도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의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방식이 허용되어 3자기업 이외의 또 다른 투자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 합자투자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와 중국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고,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손익을 책임지며,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 책임회사를 의미한다.

이는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90년 4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실시조례」에 근거한 투자 방식으로 외국기업중 과반수 이상이 합자형식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합자투자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중국내 설립 등기된 중국법인 : 중국의 관련법규에 의해 중국내에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동 중외합자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들을 준수한다.
- 공동 손익부담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한다.

- 공동투자 공동 경영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공업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며,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의 결정을 총경리(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 유한책임회사 :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총액 이내로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간의 연대 책임 의무가 없다.

(사례1) 제3국과 합자투자 성공사례

J사는 홍콩재벌인 F사, 일본의 M사 및 중국기업등 4개국이 연합하여 중국에 컨테이너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4개국 합자기업임에도 경영권은 J사 확고히 확보하였으며, 파트너인 화교기업의 자본, 인맥과 중국정부의 경영지원 등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하게되었다.

나. 합작투자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투자방식이다.

합작투자는 1988년 4월 13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규정과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투자형태이다.

투자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합작투자기업은 약 15%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작투자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약주의 : 중,외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 모두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 출자의 다양성 :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노동력, 용역,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 자원을 활용한 출자가 가능하다
- 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투자기업은 회사법인형태나 법인격이 아닌 연합경영체 형태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 동사회 구성여부도 자유롭고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 이윤 분배의 융통성 : 중국과 외국투자자 쌍방의 출자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 분배가 모두 가능하다. 즉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가능하다.
- 유한 책임회사 : 합작투자기업의 형태가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쌍방은 각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투자자본의 회수 : 합작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측과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된다. 외국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시에 합작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측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투자자에게 상환하여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거나 이윤 분배비율을 외국투자자의 것을 크게 하는 것, 처음부터 외국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중에서 동 상환금액을 선공제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것 등이다.

(사례 2) 현지 촌장과 합작기업 설립으로 성공적인 투자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합작투자시 신중을 기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합작기업 설립 후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단독투자토록 권유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외자 유치와, 부실 국유기업의 경영 활성화라는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많은 지방 정부는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과 합작투자토록 유치하고 있으며, 유치과정에서 실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중국에서 합작을 통해 성공을 보장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도 C사는 현지에 역량있는 인사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회사의 중국측 파트너 A 씨는 상해시의 한 촌(우리로 보면 洞)의 촌장 겸 촌 당서기를 겸하고 있는 지역 유지이다. 회사 경영에는 경험이 없어 경영 간섭이 심하지 않은 반면, 진(우리의 區)의 주요인사는 물론 상해시 고위 인사들과도 많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어 회사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의 인맥과 역량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써 C사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독자투자

단독투자기업으로 우리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 독자적인 경영권 확보가 보장되어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선호되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나 3차 산업 부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등 합자나 합작 등 소위 합영기업과는 달리 회사 설립에 많은 제한이 있다.

독자기업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법률적 지위 :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은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내에서 중국법에 의거 설립된 중국의 기업법인이다.

- 독자적 경영관리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며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 부담한다.
- 유한책임회사 :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한다.

◎ 삼자기업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 자 기 업
근거법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시행규칙	외자법과 실시세칙
기업 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투자 제한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큼
기업부채책임	지분율비례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회사-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공동책임	출자액 한도
이윤 배분	지분율	계약내용	독점
법인세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최 고 의 사 결정	동사회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임의
경영 관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영	- 공동 또는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토지 사용권 획득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 명의 양수 혹은 임차	좌 동	- 외자기업 명의 유상양수 *임차사용 제한
출자 자원	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	현금,현물,지적재산권 및 용역출자 가능	외화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토지불가)
출자 평가 의무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계약내용	모든출자분 화폐가치로 환산 평가
지분	등록자본금 25% 이상	등록자본금 25% 이상	등록자본금 100%
투자 자본 회수	- 당기순이익 배분 - 청산이익배분	- 당기총이익 배분 - 당기 판매수입, - 생상품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 당기 순이익 - 청산이익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 자 기 업
출자 기한	- 일괄불입 : 6개월내 - 분할불입 : 규모별 불입기간 규정 .1회불입분:출자액15% 이상,영업허가발급90일 등록자본50만달러이하: 영업허가발급후 1년내 50만- 100만달러:1년반 100만- 300달러: 2년내 300만- 1,000만달러:3년 1,000만달러이상:인가 기관에 따라 별도처리	-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불입 .1회불입:출자액15%이상 영업허가발급 90일내 .등록자본 50만달러이하: 영업허가발급후 1년내 .50만- 100만달러:1년반내 .100만- 300만달러:2년내 .300만- 1,000만:3년내 .1,000만달러이상:인가 기관 실정에 따라 별도 처리	- 분할불입가능:규모별 불입기한 규정 .1회불입분:출자액15% 이상 영업허가발급 90일내 .등록자본50만달러이하: 영업허가발급후 1년내 .50만- 100만달러:1년반내 .100만- 300만달러:2년내 .300만- 1,000만달러:3년내 .1,000만달러이상:인가기관 실정에따라 별도처리
자본 感資	불가 명문화	미규정	불가 명문화
청산 자산 처리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을 배분	계약내용에따라 배분 - 중국측이 투자기간중 외국투자자자본을 조기 상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자산 중국측 귀속이 일반적	청산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라. 유한공사

1993년 12월 29일 공포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國會社法」에 근거한 투자 방법으로 대중국투자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개념의 투자 방법으로, 외국 투자자가 유한공사의 창립자로 또는 주주로서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주식유한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회사법에 의한 주식유한회사(股分有限公司) 설립요건

- 유한회사의 설립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하되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을 주식 유한공사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발기인은 최소한 5인 이상으로 하여 주주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발기인이 납입하고 공개모집된 주식자본이 최저 10백만元이다
- 주식발행등 회사의 설립절차는 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주의 모집, 주식발행, 주식의 양도,양수의 모든 절차는 “공개,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투자자의 권익이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회사의 정관은 발기총회에서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 회사의 정관은 발기총회에서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 주식유한회사(股分有限公司)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이사회(동사회), 감사회 등 법규정에 정한 조직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주주총회 : 투자자의 모임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사설립과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정관(章程)을 제정·개정한다.
 - 이사회(董事會) :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며 회사의 일상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사장(董事長)은 법인대표가 됨
 - 감사회 : 회사경영 상황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 회사는 일정한 주소와 필요한 생산 또는 경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법과 삼자기업법의 차이점

- 등록자본 :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는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주주의 실지 투자자본은 일시불로 납입되어야 한다. 3자기업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 회사조직 : 3자기업법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두지않고 상호 협의와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법에 의한 유한책임회사는 2- 50인의 이사를 비롯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
- 이익배당과 투자자금 회수 : 합작기업법에서는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기간만료 전에도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으나, 회사법에 따라 투자한 주주는 회사 등록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 또는 지분 양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투자 방식

1) 임가공 위탁생산(對外加工裝配)

외국투자자의 출자와 현지 기업설립이 수반되지 않은 임가공 위탁생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가 아닌 무역이 된다. 임가공 위탁

생산 방식은 지금도 중국 투자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학습효과를 획득하거나 우리투자자의 투자자원이 제한된 경우 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안정적 수입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들은 3/4정도가 도시인근 농촌 지역의 향진기업들인 바, 이들 향진기업들은 직접 수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딜리버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중국에 임가공 위탁가공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 제품의 딜리버리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임가공 위탁가공은 1979년 9월 3일 공포된 「關於發對外加工裝配和中小企業補償貿易辦法的通知」와 1987년 11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於對外加工裝配業務的管理規程」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임가공 위탁생산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來料加工 : 외국 위탁자가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자가 조립가공후 이를 위탁가공자에게 공급
- 來樣加工 : 외국 위탁자가 완성품의 디자인, 규격, 상표, 품질기준 등을 제공하면 중국 수탁가공자가 필요한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자에게 공급
- 來件裝配 : 외국 위탁자가 KD, CKD형태로 부품과 조립설비 공급후 중국 수탁가공자가 이를 조립생산후 외국위탁가공자에 공급

유의할 점은 우리 국내의 관련 규정에서의 제한과, 중국의 來料加工업종 제한으로 인한 투자제한 규정이다. 즉 우리투자자가 중국내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에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해외 직접투자자와 연계무역 두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이들 방식이 모두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한다. 특히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동 기계설비 대금을 임가공료로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는 ①외국환 관리규정 7-6조 1항에 임가공 위탁생산 3년 이내에 대금상각이 완료되어야 하고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9조에 의해 대금상각이 전액 이루어져야 하며 임가공 위탁생산품의 수입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1988년부터 대외경제무역부를 통해 다음 18개 품목들에 대한 來料加工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투자자들로서는 다음 품목에 대해 허가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면사, 면직물생지, T/C사, T/C직물 생지
- 표백 면직물, 표백 T/C직물
- 아라비안 로브
- 기계 생사, 실크 웨이스트
- 레이스
- 진주
- 토끼털(토끼털 함량 50%이하의 혼합모 제외)
- 순양모 카페트
- 염적 버섯 통조림
- 혁제 작업용 장갑(작업용 장갑용 재단 피혁 포함)
- 텅스텐 제품
- 산화 안티몬
- 산화 이트륨을 포함한 희토류 제품
- 홍콩 및 마카오 지역 공급용 위생지, 골판지, 마사, 마직물생지 (저마 50% 이상의 혼방 마직물 생지 포함)
- 홍콩, 마카오지역 수출에 대해 수출쿼터관리를 실시하는 활선 냉동식품
- 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금지나 수출쿼터관리를 행하는 상품
- 식염

2) 합작개발

합작개발은 합작투자방식의 하나로 해양석유개발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 또한 큰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측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합작개발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개발개채해양석유자원조례」에 따른 해양석유 합작개발로서 해양석유 이외 자원의 합작개발은 동 조례 내용을 준용한다.

- ① 석유자원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소유의 자원이므로 합작개발의 중국 합작선은 중국 국무원의 能源部에서 직접관리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中國海洋石油總公司에서 책임진다.
- ② 중국 영내에 합작개발을 위한 법인격의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 합작선과 외국투자선이 법인신분으로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관리를 실시한다.
- ③ 중국 합작선과 외국 투자선이 체결한 합작개발 계약은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동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국해양석유총공

사에서 실시한 해양석유탐사 입찰에서 낙찰된 자만이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④ 중국 영내의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따른 초기 탐사비용은 외국 투자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탐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외국투자선 독자적으로 탐사 리스크를 부담한다.
- ⑤ 중국 영내의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따른 초기 탐사비용은 외국 투자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탐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외국투자선 독자적으로 탐사 리스크를 부담한다.
- ⑥ 원유 채취작업은 초기단계에는 외국 투자선이 관리를 책임지며 훈련을 통해 중국 합작선이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후 중국 합작선에게 관리를 이전한다.

3) 합작생산

합작생산 역시 합작투자방식의 일종이나 중국측이 굳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합작생산이 기술도입 및 이전이 수반되며 일정한 수량의 제품만을 제한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합작투자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작생산은 별도의 준거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규정을 준용하면 되고 만약 중국 내의 준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라이선스 방식에 준하면 될 것이다.

중국의 일반적인 합작생산방식 투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항공기나 대형 정밀기계 등의 생산에 많이 사용되며 반드시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이 수반되고 외국 투자선은 중국 합작선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지도를 책임진다.
- ② 외국투자선과 중국합작선이 각각 법인신분으로 대등한 조건아래 합작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영내에 독자적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
- ③ 합작계약에는 투자 쌍방의 책임 및 권익과 함께 합작 생산하는 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품질 기준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④ 합작생산에 따른 외국 투자선의 핵심부품 공급은 중국 합작선의 기술 숙련도와 합작생산의 진행에 따라 점차로 중국내에서 조달 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합작선에 의해 전량 중국내에서 조달 공급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합작생산품은 중국 국내외에 판매하며 판매에 따른 이익은 계약에 따라 외국 투자선과 중국 합작선이 배분하며 합작생산에 따른 리스크 역시 계약에 따라 쌍방이 분담한다.
- ⑥ 합작생산기간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통례이다.

2. 무엇을 투자할 수 있나

중국 투자방법에는 현금투자, 실물투자과 공업소유권이나 기술 등의 무형의 자산도 투자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외국 투자자는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가. 현금투자

중국으로 송금된 외화 또는 자유롭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가증권, 그리고 외상투자자가 중국에서 취득한 이윤의 재투자 등을 말한다. 중국이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현금투자가 환영을 받고 있다. 중국 납입자금의 가치는 자금 납입 당일에 중국 외화 관리국이 공표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 또는 약정된 화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시설투자

기계설비, 원부자재 건축물 또는 장소 사용권 등의 투자를 말하며 외국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설비 또는 기타 물자로 투자하고 중국측이 건축물 또는 장소사용권을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투자로 제공되는 실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나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실물로서 그 실물의 유효한 소유권과 처분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투자 양측이 투입하는 실물명세서에 따라 “공평, 합리”의 원칙에 의거 투자 쌍방이 정하거나, 투자가치 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상호 합의하에 공인할 수 있는 제 3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투자액을 평가할 때에는 기업에서 실물을 인수한 일자, 확인된 수량, 그리고 상호 합의한 가액을 기장하여 근거로 남겨 두어야 한다.

기계설비 등 실물로 투자할 경우 당해 물품의 필요성 여부, 통관, 상품검사, 가치평가 등에 있어 중국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 및 비용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 요구하는 설비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계설비 등 실물투자는 제품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 외국측이 투자하는 기계설비 등 실물은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은 가능하지만 고가이고 기술적으로나 설치기간 등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 절대 유리할 경우여야 한다.
- 실물투자분은 당시 국제 시장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 상품검사부서의 감정을 필히 받아두어야 한다.
- 실물투자분의 투자내용은 중국측 합자기업 주관부문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외국측이 낙후한 설비를 제공하여 중국측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는 법에 의거 중국측에 배상해야 한다.

● 투자 자산 감정신청 절차

- 감정신청 접수 : 각지방 수출입 상품검험국
- 감정신청시 구비서류
 - 감정신청서 양식 작성: 감정목적 설명, 대상 및 요구사항 등 기재
 - 기타 첨부서류 : 감정재산목록, 통관신고서, 계약서, 영주증, 보험증서, 수리비용계산서 및 설비 기술문건 등
- 신청인이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감정을 한 상검국, 직상급 또는 국가 상검국에 직접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수출입상품 재검사 방법(進出口商品復驗辦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례 3) 상품검험국 감정결과, 외국투자자 현물출자분 감액을 16%에 달해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중 현물투자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의 현물투자분에 대한 감정을 위해 ‘外國投資者投資財產鑑定辦法“를 94년 3월 18일 제정하여 같은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95년말 현재 상품검험국은 총 15,610건의 외국 현물투자재산을 감정하였는데 외국 투자자의 자기신고액이 66억6천만달러인데 반해, 감정결과는 56억달러로 투자자의 신고액과 감정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감액율은 16%(10억6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 공업 소유권, 전문기술 등 무형자산의 투자

중국에 공업소유권, 전문기술과 비특허기술을 투자하여 투자지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 평가액이 등록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업소유권 또는 전문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 시급히 필요로하는 신제품 또는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것
- 기존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거나 생산 효율을 높일수 있는 것
- 원자재, 연료, 동력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
- 중국 심사·허가기관에서 감정이 가능한 공업소유권, 전문기술

●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업소유권과 전문기술 소유권 인정서
-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 사본
- 상기증서의 유효성, 기술의 특성, 실용가치, 평가산정 근거
- 중국측과의 가격협약서
- 상기 소유권과 처분권에 대한 유효증빙

한편 공업소유권 및 전문기술이 외국측 투자자가 제공한 자료와 같지 않을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외국측 투자자에게 기한내에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고의적으로 낙후된 기술로 중국측에 손실을 입혔을 때 중국의 관련 부문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이외에, 비특허기술과 기타 재산권 등도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할 수 있다.

특허권 차원에서 기술을 특허와 비특허기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특허기술은 말 그대로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이고, 비특허기술은 특허권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을 말한다. 비특허 기술로 투자할 경우 그 기술의 특성, 실용가치, 평가액 산정 계산 근거 등의 자료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술비밀 보호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중국에 투자가 가능한 비특허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식, 경험, 정보를 포함한 기술 또는 비법
- 공개하지 않은 기술
- 경제적 이익 또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실용가치가 있는 기술
- 기술소유자가 적당한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였으나 비밀보호 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제공한 기술

(사례4) 중국 기술을 활용한 합작투자 성공사례

일본의 S사는 고주파 자동 시뮬레이터, 정전기 장해 시험기, 낙뢰발생기 등 첨단 설비를 이용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술인력의 한계로 사업확대가 어렵던 차에 중국의 발달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소와 합자기업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중국측 파트너는 상해에 소재한 중국연구소로 일류대학을 졸업한 과학기술자만 760명을 보유하고, 전기 자동제어 오코메이션, 전기공학 신기술 응용, 전자 검용기술, 전기합금을 연구하는 4개의 연구실과 실험공장을 가지고 1,500개 항목의 연구성과를 거양한 선진 연구기관이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 결과가 기초과학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이를 상품으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중국 개개인의 설계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등 상품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다. 중국 연구원들의 꾸준한 일본 연수 교육을 통하여 기업 존재의 의미, 제품의 납기 등 자본주의적 경영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기초과학을 상품화하여 성공적인 합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장 투자기업 설립 전 절차

(기업 설립전 절차)

- 투자준비, 투자 예비상담 및 意向書 및 協議書 체결
- 부지확보
- 투자 예비허가 신청(項目建意書 혹은 外資企業設立報告書 제출)
- 기업명칭등기신청(可行性研究報告書작성)
-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작성
- 계약(合同) 체결 및 정관(章程)제정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기업 정관 제정)

(인가절차)

- 세부내용 5장 참조
- 투자허가 신청(우리나라와 중국 동시)
- 기업통계 등기신청
- 기업설립 등기신청
- 기타 외환등기, 세무등기 등

1. 투자예비상담과 예비허가란 무엇인가

가. 의향서 협의서 체결은 신중하게

중국 투자지역의 선정 작업 후 투자 쌍방의 실질적인 투자의사 타진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우리 투자자측과 중국 투자자측의 투자의사가 확인되면 양측의 상담을 통해 투자사업의 대강의 내용을 정해 이를 意向書와 協議書라는 형태로 문서화하게 된다.

의향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투자 허가신청시 반드시 제출할 문서는 아니나, 중국측 투자선은 의향서를 통해 우리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중국의 투자허가기관 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측과의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 착수를 허가받는 예비허가 신청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서이다.

우리 투자자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통상 관할 지방정부의 주무부서

와 의향서를 체결하게 된다. 만약 개발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관리위원회 혹은 개발구총공사측이 우리 투자자측에 대해 의향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의향서와 협의서는 정형화된 표준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반드시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강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계약체결을 위한 본 상담에 대비하여 효과적일 것이다.

- ① 투자방식
- ② 투자기업 명칭, 설립장소 및 소재지
- ③ 사업내용
- ④ 투자규모
- ⑤ 투자기간 혹은 합자/합작기간
- ⑥ 출자 지분
- ⑦ 경영방식
- ⑧ 이사회 구성방식
- ⑨ 생산규모 및 생산방식
- ⑩ 설비 혹은 기술방식
- ⑪ 자금 조달방안
- ⑫ 공장 확보, 원자재 조달 방안
- ⑬ 제품 판매방안
- ⑭ 이윤분배방식
- ⑮ 분쟁해결방식

협의서는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기 어렵다. 계약이 비로소 완전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문서이다. 하지만 의향서나 협의서 체결이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 해도 체결 당사자들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도덕적 책임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의향서나 협의서의 불이행은 결국 신의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의향서나 협의서의 내용은 이후 합작 투자계약체결시 계약서작성의 근거가 되므로 중요내용은 심사숙고 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세부 내용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나. 투자 예비허가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

투자의 예비허가는 우리 국내에서는 없는 절차이나 중국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자절차이다.

중국에서의 투자 예비허가는 소위 項目立項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사업제안서(項目建議書)를 작성하여 ① 중국측 합자/합작선 해당기업 행정감독 주무부서의 일차 심사를 거쳐 ② 동 주무부서가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허가 위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허가기관에 예비허가를 신청한다.

단독투자인 경우는 우리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국내 대리인이 우리 투자기업 설립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허가기관에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제출한다.

특히 합자나 합작인 경우 투자제안서를 통해 중국측 합자/합작선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빠른 허가취득과 투자정착

S기업은 약 2년간에 걸쳐 위해, 대련, 영구, 상해, 북경 등지를 골고루 다니면서 상세히 투자여건을 조사하여 현지 진출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한 덕분에 빠른 시일내 투자를 완료하고 손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조사단계에서의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허가 취득을 위한 수속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수속을 한달만에 신속히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기관들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많은 관리를 만났던 것이 關係구축의 중요한 기회가 되어 나중에 기업운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1) 투자제안서

투자제안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합자나 합작투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① 사업명칭

합자/합작방식 여부, 중국측 합자/합작선 명칭, 중국측의 사업 책임자, 생산제품 혹은 사업내용 등

② 합자/합작기업 설립 이유

생산제품 수출, 외국기술 도입, 기술지도, 세수증대, 품질향상 등

③ 중국측 합자/합작선 현황

국유, 집체 혹은 사영기업 여부, 인력고용 현황, 기술보유 현황, 고정자산 보유현황, 부지 현황, 생산 현황, 판매현황, 수출 현황, 납세 및 이윤현황 등

④ 외국 투자자 현황 : 투자자 명칭, 국가, 자본, 업종, 규모, 제품 성가, 판매이윤 현황 등

⑤ 합자/합작사업 내용 : 업종 및 경영범위, 합자/합작기한, 설립 지, 부지면적, 공장면적, 공장 확보방안, 직공수, 관리조직, 투자액, 등록자본과 출자비율, 출자형태 및 방식 등

⑥ 제품 판매방안 : 생산제품 수준, 판매방안, 수출방안 등

⑦ 생산조건 : 원자재 조달방안, 연료 공급방안, 전력 공급방안, 수송방안, 통신시설 가설방안 등

⑧ 경제적 효과 평가 : 원가 및 원가 추산, 에너지 및 원재료 소모량 추산, 투자이윤 회수시간 추산, 외환수지 추산, 세수증대 효과, 고용효과, 기술향상효과 등

⑨ 사업 추진일정 :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기한, 상담기한, 계약 기한, 시공기한, 설비 설치기한, 시험생산 기한, 정식생산 기한, 정식영업 개시기한, 외국 투자자 현황 실사 계획 등

2) 외자기업 설립보고서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도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투자자측이 단독투자를 하여 중국내에 소위 외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등과 체결한 의향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관할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투자의 예비허가를 득한다.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심사기한을 다소 달리하고 있지만 일단 접수된 외자기업 설립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장 30일 이내 가부를 결정 통보토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자기업 설립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외자기업 설립 목적
- ② 외자기업의 업종 및 투자규모와 생산규모
- ③ 외자기업의 생산품
- ④ 기술 및 설비도입 방안
- ⑤ 생산품의 중국 내수와 수출방안 및 그 비율
- ⑥ 공장 부지 소요면적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요구수준

2. 복잡한 중국의 토지제도 이해 필요

중국에 투자하면서 우리 투자자측이 당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특유의 토지 및 건물 소유와 사용제도의 이해이다.

우리 투자자측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대개 ① 중국측 합작/합작선의 현물출자 ② 유상양수 ③ 유상배정 ④ 임차의 4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공장건물은 ① 중국측 합작/합작선의 현물출자 ② 구입 ③ 임차 ④ 신규건축의 4가지 방식이 대종을 이룬다.

한편 중국은 토지 관련 용어가 다양하여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개념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土地開發費는 토지를 일정한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성격의 비용이며 土地使用費는 국가에 대해 납부하는 자원세 성격의 세금이다. 중국에서는 이상 두가지 비용을 합하여 場地使用費라고 칭하는데 중국의 모든 용지는 모두 일정한 기준에 의해 場地使用費가 고시되고 있으며 동 場地使用費 기준의 결정과 고시는 각 성, 직할시, 시급 지방정부 결정사항이다.

(사례 2) 토지사용권 매각 제도시행으로 상해드림 실현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도시로 상해를 빼놓을 수가 없다. 상해 사람들은 “일주일만 상해를 떠나 있어도 그 변화를 따라 갈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해 도시의 변화는 눈부시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토지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 조치인 토지사용권 매각을 최초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전통적인 중국 토지제도는 ‘3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無償, 無期限, 無流動” 즉 국가나 노동자집단 소유로 분배된 토지는 무료이며, 영구히 이용할 수 있으며, 절대 매매될 수 없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토지사용권 매매제도는 '85년 당시 강택민 상해시장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채택되어 '92-'94년사이 3년동안만 보더라도 무려 600건의 토지양도가 상해시에서 이루어졌다. 약 50억달러(상해시 연간재정의 5배에 해당)의 외화가 흘러들어 온 것이다. 외국인에게 유상양도된 토지는 외국 자본에 의해 그 자체로 개발이 되고, 토지 유상양도로 생긴 자본으로 이주민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개발 지원할 수 있어 2중의 개발효과로 상해시의 지도를 빠르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토지사용권 매매제도는 이제 중국 제2의 토지정책으로 정착되어 중국 개혁, 개방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지와 공장을 확보, 사용하는 경우에 중국은 삼자기업에 대해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각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쳐 수출형기업, 혹은 선진기술형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토지사용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수출형기업, 선진기술형 기업에 대한 토지사용비 혜택

- 토지사용비를 5년간 일괄 면제, 6년차부터 5년간은 50% 감면
- 또한 외자기업이 일차산업,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경우 투자기간중 토지사용비 면제하고 토지개발비도 최고 50%까지 감면
- 토지사용비는 대개 지역별로 최고 상한선이 고시되고 있는데 수출형기업과 선진기술형기업에는 별도의 낮은 상한선 책정
- 일부지역에서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사용비를 5년간 50% 일괄 감면하고 수출형기업이나 선진기술형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기간중 계속 50% 감면 조치를 연장

북경시 수출형 기업 요건 및 신청서류

북경시의 수출형기업 요건

- ① 생산형기업
- ② 당해년도 수출액이 당해년도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③ 당해년도 외환수지가 흑자인 기업

(신청서류)

- ① 선진기술기업인정신청서
- ② 프로젝트제안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계약, 정관사본
- ③ 비준증서 사본, 영업집조 사본, 출자증명서 사본
- ④ 선진기술기업 자기 소개서
- ⑤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소속기구의 해당기술 평가서 등

가. 공장부지의 현물출자

우선 공장부지의 현물출자인 경우는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해당 부지 사용권을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土地管理局이나 房地產管理局에서 출자기한내 혹은 계약에 별도 약정된 기한내에 출자절차를 마치고 등기변경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로서는 계약에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명의이전 절차가 끝나 합자/합작기업 명의의 土地使用證書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한다.

토지사용증서를 확인할때는 무엇보다도 토지사용권 기한이 투자기한보다 짧아서는 안되며 예정된 부지에 대한 명의가 정확히 이전되었는지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에 부지에 대한 지적도상의 위치와 면적이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에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임대, 저당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이점도 사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토지의 토지사용비를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국측 합자/합작선은 배분받은 이윤중에서 해당 토지사용비를 납부한다. 만약 이윤배분이 없는 경우에는 합작/합작기업이 납부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통상 기업관리비 계정에 기입한다는 점도 우리 투자자측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토지관리국과 방지산관리국의 업무분장 내용이 우리 투자자측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① 토지관리 업무는 일단 토지관리국이 총괄적으로 허가업무를 책임지고 ②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관리와 유상양수및 양도 즉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 등의 가격관리는 방지산관리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사례 3) 중국측 투자자인 토지 평가액 관련 분쟁 발생사례

① 중소기업인 B사는 중국 동북지방의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투자를 추진하였다. B사가 설비를, 중국측이 공장부지와 건물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지분과 경영권 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다. 막상 설비 투자 단계에서 양측에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B사는 설비투자를 1년간 보류하게 되었으며, 중국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1년후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측이 1년간 자신들이 투자하기로한 토지비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자신들의 지분에 2배를 인정하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투자할 토지를 1/2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측의 지분확대를 인정할 경우 B사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입장으로 불가피 중국측 토지 투자부분의 축소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② S골프장은 일본과 중국이 50:50의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골프 인구의 증가 등으로 경영 호황을 이루게 되었다. 최초 일본측은 자본을 중국측은 부지를 투자하고 경영권은 일본측이 갖기로 하였다. 경영이 호전되자 중국측은 자신들이 투자한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지분과 경영권을 재조정하자고 하여 양측간 마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공장부지의 유상양수

부지의 유상양수는 삼자기업이 공장건물을 설립하거나 기타 사업 목적의 필요에 의해 특정한 부지의 사용권을 원래의 토지사용권 등기자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아 양도이전 등기를 거쳐서 부지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해당되는 부지의 유상재양도라고 하는것이 보다 적절하다.

왜냐하면 현행 중국의 헌법 및 토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일차적인 유상양도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상 양수과정을 거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이를 유상으로 재양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지매입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지의 유상 양수는 양수가격은 비교적 높지만 ① 부지의 제3자에 대한 재양도와 임대가능하며 ② 저당이 가능하다는 점등이 삼자기업측으로 하여금 동 유상양수방식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례 4) 토지사용권, 건물 영구소유권 확보로 현지금융 활용

S사는 중국에 단독투자 공장설립을 위해 '94.6월 상해시 토지관리국으로 부터 6,633㎡의 토지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을 총 169,805달러에 획득하였다. 2,335㎡의 공장 건물을 직접 지었다. 건축비는 129,826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우리와는 다른 건축 관행과 특히 건축자재 조달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건물은 지방정부로 부터 영구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시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토지담보를 환영하지는 않으나,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영구 소유권 확보하여 이를 담보로 현지 은행에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들 유상양수는 각각 1990년 5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城鎮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국유토지 사용권의 양도 및 재양

도 조례)와 國務院 關於外商投資開發經營成片土地潛行管理辦法(외국인투자기업의 대지 개발경영 관리판법)에 의거하고 있다.

실제로는 공장부지의 유상양수는 대개의 경우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에 의한 투자허가시에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통해 어느 지역의 부지를 어떠한 조건으로 유상양수할 것인지가 이미 결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삼자기업의 설립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전에 이미 예정된 공장부지에 대해 國有土地使用權出讓合同(宗地出讓合同)을 체결하여 공장부지의 유상양수에 착수하여야 하는 데 동 계약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의 허가를 요하며 부속서류의 하나인 토지사용조건서에 의해 사용용도와 시공 및 준공기한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때 우리 투자자가 사전 필히 확인할 사항은 삼자기업 설립후 일정기간내에 소정의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中華人民共和國 토지관리법 및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法 실시조례에 의거 각성 및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관리규정을 정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어 상해시같은 경우는 투자허가시에 예정된 공장부지에 대한 예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자기업 설립후 30일 이내 정식으로 소정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예약등기를 취소토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와 집체소유의 두가지 소유권자가 있는데 현행 중국 헌법에 의해 국가만이 점유, 유상양도, 임대 및 기타 방식에 의해 토지사용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유토지에 대해서만 삼자기업의 사용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지의 유상양수시에는 소재지 현정부 이상에 등기되어 있는 土地使用證상의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여 과연 합법적으로 토지 사용권의 유상양도 및 재양도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집체소유인 경우에는 사전에 집체토지 사용권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다시 배정받고 이를 다시 삼자기업에 유상 재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집체소유 토지 사용권자는 국가에 대해 소정의 배정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國有土地使用權出讓合同과 土地使用條例

(宗地項目)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당사자
- ② 부지의 위치, 면적(지적도 확인)
- ③ 부지의 사용기한
- ④ 부지 사용용도
- ⑤ 부지 유상양수 금액 및 납부방식
- ⑥ 부지 사용권 이전등기 절차 및 기한
- ⑦ 부지의 사용용도에 따른 시공 및 준공기한
- ⑧ 부지에 건축될 건물의 구체적 건축계획
- ⑨ 공공시설물을 위한 무보상 수용조항
- ⑩ 부지내 시설물의 무단 철거, 개축, 증축 금지조항
- ⑪ 전기, 수도, 접속도로 설치비용 부담조항
- ⑫ 분쟁처리조항
- ⑬ 위약금 조항
- ⑭ 사용권 연장 및 해지조항

(사례 5) 토지 유상양수시 계약서내용 악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Y사는 요령성 종이 제조공장의 토지 일부 및 건물, 전기, 용수설비를 30년간 사용하는 유상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 중국측은 대금을 받고 기존 설비를 30일내에 철거해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상 철거시기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이용 설비를 철거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내에 일부 주민들까지 들어와 점거, 거주하였다. Y가 시정부 등 유관기관에 호소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다. 부지의 유상배정

부지의 유상배정은 삼자기업측이 투자허가기관에 대해 투자목적에 따른 부지 배정을 요청한데 대해 투자허가기관이 이를 다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내 土地管理局이나 房地產管理局, 城市規劃管理局 등의 토지관리 부서에 요청하여 사업 목적에 따른 국유토지를 삼자기업측에 대해 배정하고 삼자기업측이 동 배정된 토지를 소재지 지방정부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부지의 유상양수와 유사한 방식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배정은 문자 그대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측에 의한 것으로 ① 배정가격이 유상양수 가격보다 낮으며 ② 배정받은 부지에 대해 허가된 투자목적 이외의 용도변경을 하기 어려우며 ③ 제3자에게 부지를 다시 재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④ 부지의 저당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등이다.

한편 공장부지의 유상배정 역시 투자허가 이전에 이미 지역이나 배정조건들이 모두 사전에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자기업 설립 후 부지의 유상양수와 마찬가지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측과 토지사용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는 外商投資企業土地使用合同(劃撥土地使用權合同)을 체결한다.

외상투자기업토지 사용계약(劃撥土地使用權合同)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당사자
- ② 부지의 위치, 면적(지적도 확인)
- ③ 부지 사용기한
- ④ 토지개발비와 토지사용비 금액 및 그 납부방식
- ⑤ 부지의 사용개시 기한(부지의 정지 및 기존 시설물 철거기한)
- ⑥ 부지 사용용도
- ⑦ 부지에 건축될 건물 시공 및 준공기한
- ⑧ 분쟁처리조항
- ⑨ 위약금 조항
- ⑩ 사용권 연장 및 해지조항

(사례 6) 불하조건 위반으로 토지사용권이 수용된 사례

B사는 시정부 토지 약 600평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토지사용권 획득에 따른 불하금은 모두 지불했으나, 불하계약 규정 및 조건에 의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토지관리국은 토지사용권을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B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민법원은 “계약이 정한 기관 및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관리부문이 이를 개선시키고, 벌금 부과 및 사용권의 무상회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

정에 의거 토지관리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라. 부지의 임차

토지사용권 소유자로부터 해당되는 부지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임차료를 토지 사용권 소유자 즉 임대자에게 납부한다.

이때 우리 투자자들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① 中國의 특유의 토지제도로 인해 中國내 모든 토지가 전부 임대 및 임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부지의 사용권 임대차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② 임차료의 산정에 있어 임차료는 통상 해당되는 부지의 토지개발비와 토지사용비를 포함한 場地使用費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임차료에는 이들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場地使用費는 임대자측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해당되는 부지의 임대차 가능여부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과 방자산 관리국의 등기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中國내 모든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국의 허가를 받고 방자산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장건물의 구입과 임차

공장건물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장건물만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中國의 사정도 우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구입과 해당되는 건물부지 사용권의 구입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일반적인 경우 공장건물을 구입 사용하는 우리측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해당되는 부지를 일괄매입 즉 유상양수할 필요가 없겠으나 中華人民共和國 城鎮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潛行條例 제23조와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건물과 부차물의 소유자는 동 건물 및 부차물 사용범위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건물 구입시는 해당되는 토지의 유상양수도 병행되게 된다.

이점 우리 투자자측은 필히 사전 확인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상 건물과 부착물의 소유기한은 해당 토지의 사용권기한에 의해 제한되므로 설사 우리 투자자가 건물을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주의 해당 토지사용권 기한이 끝나게 되면 건물 구입에 따른 건물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토지사용권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소유하면 우리 국내의 건물세에 상당하는 房産稅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산세의 과세율은 건물 최초가격의 70% 내지 80% 즉 과표의 1.2% 상당액을 연간 방산세로 납부한다. 방산세의 과세율은 중국 전지역이 동일하나 과표의 산정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삼자기업이 소유한 공장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계약 역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방지산 관리국에 등기되어야 하며 임대료 수입의 12% 상당하는 방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택지 조성을 하여 우리 국내의 공단에 상당하는 개발구를 조성하고는 개발구내에 소위 표준공장을 건설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표준공장을 구입하여 개발구에 입주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발구내 표준공장의 구입에 대해서는 방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는 예도 있다.

그러나 임차의 경우는 다르다. 필요로 하는 공장건물만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사용하면 되고 동 임대차계약 내용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방지산관리국에 등기되어 우리 투자자측의 임차사용권이 보호 받을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는 토지 사용권은 공장건물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서 공장건물의 임대자측이 해당 토지의 場地使用費를 납부하게 된다. 우리 투자자 측이 공장건물 임차료와는 별도로 해당 토지의 토지사용비를 납부토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제정되어 있는 土地使用費潛行規定에는 건물 임대자가 토지사용비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다.

(사례 7) 부지임차료와 별도의 場地使用費 납부요구로 분쟁 발생

S사는 북경 근교의 개발구에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S사가 이 곳에 입주하던 시기만 하여도 입주업체가 많지 않아 아주 좋은 조건에 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다. 그 후 북경시와 인접한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이 개발구의 전반적인 지가 및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회사는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한 관계로 임차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임대주로 부터 공장 임차료 이외에 그동안 부지사용료에 해당하는 場地使用費를 별도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건물임대주가 場地使用費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장 임대계약서상 場地使用費 납부자에 대해 명기하지 않은 점을 임대주가 이용한 것이었다. 지루한 갑론을박이 지속되다가 결국 일부 비용을 S사가 납부하되 향후 場地使用費는 임대주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마무리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건물 임차료는 건물부지의 場地使用費가 기준이 되는데 場地使用費는 대개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조정고시되며 조정 폭 역시 30%를 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 측으로서는 임차료 조정조향을 결정함에 있어 이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 임차료를 년단위로 지불하는 방법과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는데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없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임차료의 선지불에 따른 이자소득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반적인 예금 금리는 년 10% 수준(정기예금, 1년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임차료를 일시불로 하는 경우 건물 임대주가 건물부지 사용권을 과연 건물을 임대하는 기간만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특유의 토지제도에 의해 지상 건축물과 부착물의 소유기한은 해당 토지의 사용 기한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때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과연 우리 투자자측이 임의로 시공을 할 수 있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建設工程質量監督機關으로부터 사전 시공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된 시공업체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예상외로 많은 비용을 요하게 되어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장건물을 구입, 임차 할때 사전에 개조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공장건물의 건축

중국에서 예정된 기한내에 계획대로 공장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① 공장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중국 국내 관련규정 ② 중국의 공장 건물 건축 시공 및 도급제도 ③ 중국의 건축자재 조달 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우리 투자자측으로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요하는 일이 될 것이며 자칫하면 모든 투자준비과정이 끝나고 정작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되어 전체적인 투자사업이 본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상황마저도 우려되는 어려운 일이다.

(사례 8) 건축중에 있는 건물 구입이 신축보다 유리 - S그룹의 사례

중국에서 외국인이 건물을 신축코자 할 때 제반 허가를 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된다.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발생으로 실제 예상한 비용과 기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신규 건축 추진보다는, 기존 건물을 구입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S그룹의 경우 북경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중에 있던 건축물을 구입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로인해 신축허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자체 건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공장건물 건축단계에 이르면 우리 투자자측은 이미 소정의

출자를 하였으며 소정의 부지비용을 납부한 상태일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된 상황으로 투자사업의 중지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구나 토지사용계약서에 시공일자와 준공일자가 명기되어 있는 가운데 동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측이 토지사용허가를 회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측으로서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장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망된다.

(사례 9) 시공업체의 지역 폐쇄성으로 공장 건축 공기 지연

고정저항기를 생산하는 L사는 '93년 중국정부로부터 투자허가를 취득하여 천진에 약 2,700평 대지를 구입하고 1,300평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시공업체를 천진이 아닌 다른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중국 특유의 지역 폐쇄성으로 인해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자재 구입 등 제반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으면서 건물 완공까지 1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공장 완공 후의 현지 전기 공급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장건물 건축기간중에는 소위 企業基本建設期間을 설정하여 소정의 토지사용비를 감면 납부토록하는 감면조치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활용 토지사용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 요망된다.

기업기본건설기간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方地產)관리국이 승인하는 사항이고 북경시는 北京市征收中外合營企業土地使用費潛行規定에 의거 토지사용비의 20%내지 30%만을 징수하고 광주시도 廣州市征收中外合營企業土地使用費潛行辦法에 의거 토지사용비의 20%내지 30%만을 징수하되 기업기본건설기간은 제조업종은 최장 2년, 기타 업종은 최장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북경시같은 경우는 북경시 財政局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생산형 기업에 대해 기업기본건설기간중 토지사용비의 전액면제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건물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투자자측이 참고할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건설업체 등급제도 : 중국의 건설업체는 1급에서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형업체로 중국전국의 모든 종류의 건설 수주가 가능하며 2급 4급은 수주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음
- ② 건설업체 단종면허제도 : 통상 설계업, 건축시공업,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각 건설업체는 해당업종의 1개 사업 면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③ 시공설계 : 대부분 건설업체가 자체 설계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 設計院에 設計를 위탁하며 동 설계도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건설위원회 혹은 建設工程質量監督機關의 사전 허가를 득한후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에서 설계한 내용도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④ 도급방식 : 설계원에 도급을 주면 설계원이 다시 시공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과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면 동 시공업체가 설계에서 자재발주, 시공까지 일괄도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외 전문공사를 위한 연합도급제, 주택건설을 위한 집단도급제, 도로공사등을 위한 공동도급제 등이 있음
- ⑤ 하도급 사전동의 :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건축주 혹은 시공 발주자측의 사전동의를 요하며 하도급계약은 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직접 체결함
- ⑥ 시공및 준공검사비 : 상해시의 예를 들면 시공허가신청비를 건축비의 0.15%, 건축공사면허비는 건축비의 0.1%, 건축공사 준공 검사비는 건축비의 0.05%로 정해져 있음

(사례 10) 하청업체 자재대금 직접 지불로 지연되던 공기 단축

일본의 A사는 북경에 외국인용 맨션을 건설중이었다. 계약까지

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공사가 예정된 공기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보통 계약에서 완공까지 5년~7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을 조사해 보니 자재대금 체불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A사가 공정공사에 건설을 의뢰하고 공정공사가 하청업체에게 자재 구입에서부터 건설을 맡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A사가 공정공사에 대금을 지불했지만 공정공사는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청부시킨 것이다. 하청업체는 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결국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자재구입 담당을 두고 직접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 하청업체에게 교부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었다.

3. 可行性 研究報告書(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의 주요내용

可行性 研究報告書(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는 투자사업의 항목건의서 혹은 외자기업 설립보고서가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후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는 중국 투자사업의 정식허가를 위해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은 동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를 판단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서류의 하나이다.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에서는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투자사업의 이윤이 미흡한 경우 혹은 외환가득 효과가 낮거나 차입금 사용비율이 높고 원자재나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등이 드러나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는 우리 투자자가 국내에서 중국 투자허가 신청시 제출을 요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근거도 되는 것이므로 ① 작성시 필히 우리측의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을 포함시키며 ② 보고서가 중국측 합자/합작선이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사전 충분한 상담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 투자허가기관의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심사 주안점은 ① 시장조사 ② 기술분석 ③ 경영관리연구 등 세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투자사업에 따라

작성된다.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와 우리 국내 투자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서를 우리 국내 투자허가기관에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동 보고서가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우리 투자자로서는 단순히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투자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시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가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우리 투자자측이 중국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합자나 합작인 경우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우리 투자자 단독투자인 경우는 중국 현지 외상투자복무 중심 등을 통해 주선받은 대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우리 투자자측의 이익보다는 중국측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허가를 득하는데 급급하여 피상적이고 졸속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쉽다.

따라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는 우리 투자자측이 직접 조사 작성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선의 방안으로 중국 현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반드시 우리 투자자측이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및 검토절차는 부록1의 내용 참고)

(사례 11) 컨설팅 전문인력을 통한 투자여건 조사

K제과는 중국의 소득증대에 따라 동사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용절감 및 시장확대를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진출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나 여건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상황에 정통한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부지 및 공장계약 사례조사, 시장여건조사 등을 통한 가행성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인허가 수속대행 등을 통해 무리없는 투자진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사업성 검토 실시상 유의점

1) 철저한 사전조사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철수기업의 경우, 불충분한 사전조사가 공통적인 실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관련조사와 채산성 조사가 중요하다.

2) 정보의 이중 점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정보처로부터 정보를 입수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현지국 관점에서의 판단

자국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금물이며, 현지국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현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례 12) 원료조달 문제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도산한 경우

E사는 중국에서 섬유제품을 가공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원료인 직물을 중국내에서 Just In Time 방식으로 필요량을 그때 그때 구입 가공 후 수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직물이 예정대로 납품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심한 경우에는 2개월간이나 납품이 끊어져 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하였다. 결국 많은 재고를 쌓게 되었고 클레임과 손해배상이 발생하여 도산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납품업체의 납기개념이 희박한 문제 뿐 아니라, 회사내의 중국 관리자에게 Just In Time 개념이 없어 납품이 지연되어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자주 있는 일로 쉽게 포기해 버리고, 직물업체로부터 출하가 적기에 이루어져도 화물운송, 유통체계의 문제로 운송도중 지연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불충분하였던 것이다.

4) 투자선의 자국기업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일반 투자환경 조사보고서로부터 얻을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5) 신중한 예측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래예측을 하지만 희망적 관측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조심스런 예측을 해야한다. 특히 현지 파트너로 선정된 후보와 현지정부는 외자도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낙관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투자환경정보와 업종별·품목별 시장환경정보를 입수하여 검토과정을 거친후에는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영업계획을 수립 및 예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사업성 검토의 핵심단계이다.

(사례 13) 투자진출시 시장조사 실패사례

보일러를 생산하는 D사는 겨울이 길고 추운 동북지방에 제품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인접한 천진에 공장을 설립하고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대리점도 개설하였다. 그러나 동북지역에서의 보일러 수요는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반면, 오히려 상해를 비롯한 장강 유역의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동북지역에서는 난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보일러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일지 않았다. 반면 장강 주변지역은 겨울 최저 기온이 0 - 10℃이나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난방불허 정책으로 난방설비가 부족하여 보일러 대한 신규수요 많음을 알게 되었다.

4. 합작계약 체결과 정관의 제정

가. 합동체결

중국에서는 계약을 合同이라고 부르고 계약서를 合同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동과 합동서를 구분하지 않아 통상 합동하면 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서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 국내의 투자 허가기관의 허가와 감독 그리고 현지 설립기업의 경영관리와 투자자 쌍방간의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중국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실제계약과 정관이나 의향서 혹은 협의서 내용이 상이할때는 일단 계약에 근거하여 해석토록 되어 있고 계약 내용중에는 이같은 준거조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투자자들이 중국에 설립하는 투자기업은 그 형태가 합자, 합작, 독자 여부를 불문하고 공히 중국법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때는 투자사업 내용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중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고 우리 투자자측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단독투자인 경우는 투자허가 신청시 계약이 필요치 않지만 합자나 합작투자는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동일한 우리 국내 투자허가기관과 중국 투자허가기관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을 한 후 서명을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 각 1부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참고) 중국의 공증제도

중국에서 公證은 국가 공증기관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률행위 혹은 법률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문서나 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공증업무는 1982년 4월 13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公證暫行條例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와는 달리 국가의 公證處에서 공증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각 지역별로 市, 縣, 區 공

증서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중국의 공증처에서 발급한 공증서를 보면 필히 공증처 공증원의 서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증서는 반드시 공증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한편 계약의 내용은 투자 쌍방의 합의사항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측이 거의 정형화된 계약서 예문을 제시하면서 동 예문에 준해 계약을 작성하여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점은 동 계약서예문은 중국측 투자이익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우리 투자자측에서 각각의 조항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의향서 혹은 합의서,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우리 투자자측과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각각 계약을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 내용을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계약의 체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차의 상담 과정을 거쳐 의향서, 협의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등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계약이 비로소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문서이며 투자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실 의향서나 협의서 혹은 중국측의 예비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례 14) 합자계약후 중국측이 설립기피로 분쟁발생사례

H사는 심천 의료공장과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정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출자 착수금 약70만元을 중국측에 지불하였다. 그런데 중국측은 인허가 수속을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회사와 합자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등록까지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H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중국측은 인허가 수속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변명하고 오히려 H사로 하여금 주주로서 관리자와 회계사를 파견하여 운영에 참가하라고 하였다. H사는 중국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인가받지 않은 양자간의 정관과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단지 양자간에 약 70만元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인정되어 이자를 포함한 수령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 합작계약서의 주요 내용

- (1) 계약체결 목적 및 준거법
- (2) 합자계약 체결 당사자
- (3) 생산경영의 목적, 범위, 규모
- (4)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 (5) 출자액의 양도
- (6) 합자계약 당사자의 책임
- (7) 기술 이전
- (8) 제품의 판매
- (9) 이사회
- (10) 경영관리기구
- (11) 원자재 및 설비 구입
- (12) 노무 관리
- (13) 세무, 재무, 회계감사
- (14) 합자기업 경영기간
- (15) 합자기간 만료시 재산처리
- (16) 보험
- (17) 계약의 개정과 해지
- (18) 출자 불이행에 대한 책임 및 배상
- (19) 불가항력
- (20) 적용 법률
- (21) 분쟁의 해결
- (22) 문자, 언어, 통지
- (23) 계약의 효력 및 기타

■ 합작계약서 작성시 주요 검토사항

1) 생산품목 범위 명시는 탄력있게

합자기업의 당사자는 가급적 단수가 좋다. 여러 당사자가 복수로 투자할 때는 의견일치가 되지않아 통일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생산품목에 있어서는 한가지 품목만을 20~30년 간 계속 생산하도록 규정하기 보다 생산품목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생산과 수출 규모 확대는 판매여건과 연동토록 규정 필요

생산규모도 매년 증가시켜 나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산후의 판매도 고려하여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범위에서 생산규모를 늘리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인 생산증가는 우리 투자자측의 수출의무 부담증가로 짐이될 우려가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가) 투자총액이 등록자본보다 클 경우 유동부채 책임 명기 필요

중국측 파트너들은 우리나라 투자자측에 투자총액을 등록자본보다 크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동자금을 우리나라 투자자측이 조달하도록 부담시키기 위해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총액이 등록자본보다 클 때는 부족금액을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조달해야만 한다. 중국측이 투자총액을 등록자본 보다 크게 하려는 것은 부채를 우리나라 투자자측이 조달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채를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측은 “부족한 운전자금을 중국측인 갑방이 책임지고 중국××은행에서 대출받는다”라고 못박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측은 각종 이유를 들어 이러한 자금조달의 부담을 우리나라 투자자측에 떠넘기려고 버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조달에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조항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출자금은 가능한 분할납입이 유리

출자 자본금의 납입은 보통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 60일, 90일, 120일처럼 몇 단계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납입하게 되면 부담도 크고, 또 중국측이 납입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기한을 4년으로 나누어 매년 얼마씩 출자

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는데 농업투자나 광산개발 등 사업의 특성상 허용된 경우이다. 참고로 매번의 출자이행 비율이 지분비율에 비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중국측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에는 초기 출자율이 대단히 높은 경우도 많다.

중국측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출자하는 설비가 완전한 신제품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출자가격은 설비판매상이 제공하는 견적서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가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출자가 완료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출자검증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회계사무소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上海의 00회계사무소 등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다) 출자 명세서는 부속문서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 규정 필요

출자명세를 정하는 방식은 대부분 계약의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가능하면 출자 자산을 상세히 나열한 명세서를 계약서의 부속문서로 작성하여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 토지사용 방법

토지의 사용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국측으로부터 임차하는 방법, 둘째 중국측이 출자하는 방법, 셋째 합자투자 양측이 합자회사 명의로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측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경우, 중국측은 일반적으로 토지 임차료를 아주 비싸게 받는데 심지어 합자기업이 망해도 중국측은 임차료를 받아 챙기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없게끔 임차료를 비싸게 받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임차료는 이미 투자한 주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잘 협상하여야 한다.

중국측이 토지를 자본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계약서상 중국측 출자 명세서에 상세히 명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합자회사 명의로 토지사용권을 구매한 경우 합자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합작 당사자의 책임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측 파트너와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양측의 책임을 검토해 보면 중국측의 책임은 협조정도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측의 책임은 아주 상세하게 못박아 두는 경우가 많다.

통상 중국측의 책임으로 규정되는 사항중 노동자와 기술자 및 경영관리인원의 초빙이나 중국에서 조달되는 원자재, 연료, 전력시설, 설비와 사무용품 등의 구매에 있어 중국측의 협조는 오히려 중국측의 이권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중국측은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해외 원자재, 설비 등의 구입을 의뢰할때 우리나라 투자선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 중국측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

- (1) 공장건물의 성실한 완공과 정확한 출자 이행
- (2) 회사 설립에 따른 중국정부 관계기관의 인허가 혹은 승인의 신청 및 취득
- (3) 토지사용권 취득
- (4) 합자회사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토지의 사용료를 영업허가증 발급일부터 5년간 면제보장
- (5) 공장, 건물, 구축물의 완벽한 시공
- (6) 중국의 법률, 조례, 규칙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
- (7) 환경보호 설비의 설치, 정상적인 가동, 환경 보호법상의 모든 책임
- (8) 중국 관리자, 기술자, 노동자 모집에 대한 협력 및 상근 노동자 확보 협조
- (9) 중국내 설비, 원자재, 차량,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구입 또는 임대하는데 협조
- (10) 원부자재, 에너지, 통신 등의 사용 및 공급에 있어 중국의 국영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 조달 보장
- (11) 한국측 경영관리자, 기술자의 입국비자는 기간이 1년이상 연속 체류 가능한 복수비자 발급을 보장하며 장기체류 증명의 취득 및 국내외 여행에 따른 제반 편의 제공, 숙소, 식사 등 체류 편의제공
- (12) 반제품 조립을 위한 외부 협력처의 확보 유지
- (13) 생산된 제품의 중국 국내판매 활동

- (14) 생산제품의 70%를 중국 국내에서 판매
- (15) 합자회사가 위탁한 중국내 제반 사항의 원만한 처리
- (16) 중국측 출자금에 대해 합자회사에서 이자부담이나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출자금과 관계되는 어떠한 비용도 합자회사와는 관련 없다는 보장
- (17) 토지사용권을 연간 평방미터당 3元씩에 취득할 책임
- (18) 중국측이 이사회 동의없이 동종, 동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3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참여하지 않을 책임
- (19) 원료와 연료를 중국에서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책임지며 구매비용도 인민폐로 지급토록할 책임

나) 우리나라 투자자측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

중국측이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중국측의 책임을 협조 정도로 가볍게 명시하는 반면 한국측의 책임은 철저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인 기술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를 한국측이 부담하고 한국 체재중 숙식비도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기술교육, 품질관리, 제품설계, 6개월내 합격제품 생산 등의 책임을 우리나라 투자자측이 부담한다.” 등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측의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측에 부담시키는 책임들을 일부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제시장 정보의 수집과 제공 책임
- (2) 중국내에서 동일 종류의 기술협력 또는 합영회사를 설립치 않을 책임
- (3) 합자회사 설립초기 한국측이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의 설치, 조정, 시운전 및 생산직원 훈련의 책임
- (4) 생산공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책임
- (5) 수입 원자재, 부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책임
- (6) 생산원가를 낮추고 원자재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점차 높일 책임
- (7) 생산량의 70%를 수출할 책임

(사례 15) 정부 비준기관 합자기업 계약서 내용 수정 요구

H사는 홍콩과의 합자기업 설립을 위해 프로젝트 건의서 및 가행

성연구보고서를 정부 관계부문에 제출, 인가 받은 후 이 가행성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합자기업 설립 계약서 및 정관에 조인을 하고 정식 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해 심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였다. 심사기관에서는 중국측의 이윤배분이 명확히 불공정하고, 동사회 인원구성이 지나치게 홍콩측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합자기업측은 재협의를 이윤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고 동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내용을 유지하여 재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외경무부에서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5) 기업 비밀유지조항 설정 필요

기업 비밀은 비교적 광의의 내용을 갖는다. 제품성능 및 경험에서 얻어진 공업기술 노하우, 각종 데이터, 경영관리법 가운데 비밀성을 갖는 경영정보, 생산, 판매전략, 고객 리스트 등이 기업 비밀에 포함된다. 합작계약 조항에 기업비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중국측 투자자에게 상업비밀이 누출되거나 중국측 투자자로 부터 제3자에게 상업 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사례 16) 기업비밀 침해사례

A는 R사의 마케팅, 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R사는 대량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수요자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일정한 시장능력과 경영면에서 기업 비밀을 형성하고 있었다. A는 퇴직전 “퇴직 후 2년간은 R사 재직시의 광고 선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R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는 퇴직 후 스스로 회사를 설립,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R사의 기업 비밀을 활용하였다.

6) 분쟁해결은 피소지 중재주의 원칙

한중 양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은 중재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중재가 진행되고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도 될 수 있도록 중재장소를 현실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느 업체들은 3萬弗 투자를 하면서 중재장소를 스웨덴으로 정해 놓은 사례도 있는데 이는 중재비용이 투자총액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스웨덴의 중재기구가 접수조차 안해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재장소는 한국 또는 중국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쌍방간에 중재지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분쟁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애매하게 제3국에서 중재한다고만 명시해 놓을 경우에도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일반적으로 중재장소는 피고지 주의 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피고지주의란 한국측이 제소할 경우 한국측은 원고가 되고 중국측은 피고가 되므로 중국에서 중재를 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측이 제소를 하면 한국측이 피고가 되므로 한국에서 중재를 하게 된다. 한국측에 가장 유리하기는 중재장소를 무조건 한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중국측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재로 합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현지 인민법원 등에 제소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중재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중재위원회가 달리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재하거나 또는 한국측이 제3국 중재기관에 회부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이러한 조항은 한국측에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7) 계약서 문서의 결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히 어느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또는 중국어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측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국측에서는 중국어를 우선하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어, 한국어, 영어 3종류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되 이들 문자간의 차이

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또 어느 업체들은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하고 문자간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때에는 양측이 신속하게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하여 기준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우리 업체들은 계약서 작성시 『협의』와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 별다른 구분없이 혼용하는 경향이 많다. 협의는 단순한 상의라는 뜻이고 합의는 양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상에 표기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계약서의 부속문서를 표기할 때 ‘부속 협의 문서’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속문서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가 되므로 반드시 ‘부속 합의문서’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합영기업 정관의 주요내용

합영기업의 정관은 계약서에 준거하여 투자쌍방의 동의하에 기업의 설립 목적, 조직, 경영관리 등 제반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로써 기업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 정관의 구성요소

- ① 기업 명칭, 법정주소, 목적과 취지 경영범위, 기한
- ② 합영 쌍방의 명칭, 등록소재지 국가명, 법정주소, 법정대표 성명,직책,국적
- ③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영쌍방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 양도 규정, 이익배당, 손실부담 비율
- ④ 이사회 구성, 직책, 권한 및 결의 원칙, 의사의 임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무
- ⑤ 관리기구의 설치와 업무처리 규칙, 총경리와 부총경리 및 기타 고위 관리직원의 직무, 임명 및 해임방법
- ⑥ 재무,회계, 감사원칙
- ⑦ 해산과 청산 방법 및 절차
- ⑧ 정관의 개정 절차 등

제5장 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기와 절차

중국에 투자설립한 기업의 설립등기 절차가 끝나 소재지 지방정부의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발급받게 되면 투자기업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소재지 관할 각종 유관기관에 외환관리 등기, 세무등기, 세관(海關)등기, 재정관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관리 등기가 끝나면 즉시 소재지 관할 외환업무 취급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현금출자 준비를 하게 된다.

1. 외상기업 설립 심사와 허가는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투자건의서에 대한 1차 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와 정관을 작성,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설립 심사와 허가를 받는다. 심사와 허가는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앙 또는 지방 공상국에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받는다.

■ 계약서 및 정관의 삼사와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계약서,정관,심사 및 허가신청서
- ② 제품판매 협의서 초안(필요시)
- ③ 설비구매 협의서 초안(필요시)
- ④ 이사회 구성명단
- ⑤ 중국측이사에 대한 위임장과 이사의 이력서
- ⑥ 외국 투자자 측 이사에 대한 선임
- ⑦ 중국측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의 이력서
- ⑧ 투자기업의 예정 상호(商號) 등록신청서(預先登錄表)
- ⑨ 이사회 위임증서
- ⑩ 기타서류(특수한 경우에 한함)

총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 경우와 투자제한업종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사의 통일적인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처, 각 직속기구, 중국 과학원이 권한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한도는 총 투자금액이 500만불에서 1,000만불로 조정되었고, 이 경우 이들 기관이 심사, 허가한 후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만 하면된다.

(사례 1) 3,000만불이상 투자를 지방정부 승인으로 추진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

H사는 투자금액이 3,000만불을 초과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관련품목의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단독투자기업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투자대금 대출심사시 동 건이 중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투자임을 지적하고 대출을 불허하여 투자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투자금액이 1,000만불 이하이고 다음조건에 부합하면 市,縣 등 지방정부에서 심사, 허가할 수 있다.

- ① 국가에서 정한 투자방향에 적합한 사업
- ② 건설, 생산, 외화수급 계획 등이 국가의 조정이나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 ③ 수출제품이 쿼타 및 허가증 관리와 관계없는 경우

2. 상호등록 및 개업등록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외상기업의 상호등록을 선착순의 원칙에 따라 등록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 기업설립 준비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때는 1년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허가를 받고 그기간내에도 개업신청을 하지 않으며 등록상호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기업의 개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우선 등록한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 상호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 공상행정관리기관 소정의 <외상투자기업 조기상호 등록신청서>(2부) , <투자기업 조기상호 등록신청서>(2부)
- ② 외상기업의 투자건의서와 기타 허가 문서
- ③ 투자자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 증명

(사례 2) 영업집조획득 이전에 설치한 사무소 간판 철거 명령

한중 항공협정 체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94년말 D항 공사는 곧 정기노선이 취항할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경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개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협정이 체결되는 데로 곧 바로 영업집조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무소 개설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사무소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였다. 사무소의 위치가 북경의 가장 변화한 거리에 위치하여 간판 설치가 취항에 따른 홍보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아직 영업집조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을 이유로 간판 철거를 명령하였고, 부득이 허가 취득 일 까지 간판을 철거하게 되었다.

외상기업은 기업설립의 비준증서를 대외경제무역부로 부터 발급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개업 등록을 한다. 이 수속을 마치고 <중국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영업집조)>를 발급받으므로써 기업의 법인자격 및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중국 법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통지에 의해 출자금액별로 기한을 정하고 동 기한내 소정의 출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營業執照)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등록자본 50만달러 미만 :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완납
- ② 등록자본 50만달러 100만달러 미만 :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반 이내 완납
- ③ 등록자본 100만달러 300만달러 미만 :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완납
- ④ 등록자본 300만 1,000만달러 미만 :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완납

- ⑤ 등록자본 1,000만달러 초과 : 투자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출자기한 연장 허가

3. 외상기업 등록변경 수속

외상기업은 등기 등록 내용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 심사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변경 수속을 밟는다.

등록 변경 수속을 신청할 경우 이사장이 서명한 등록변경 신청서, 이사회 관련 결의 및 원 심사 부문의 허가서류를 첨부하는 이외에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3부씩)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주소변경 : 주소 사용 증빙서류
- ② 등록자본 증액 : 계약서와 정관 개정 협의서
- ③ 등록자본 양도 : 주권 양도 협의서, 원계약서와 정관 개정에 관한 보충협의서, 양도 받은자의 영업허가증명과 최근의 은행 자금신용 증명
- ④ 기업의 업종변경 : 계약서와 정관의 변경 협의서
- ⑤ 이사장, 부이사장 변경 : 영입된 자의 신분증명
- ⑥ 경영범위 확대 : 국가의 특정 관리 규정과 관련 있을 경우 주관 부문의 허가증서
- ⑦ 외국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허가를 받은 후 원 등기 주관부문에 등록
- ⑧ 외상기업은 매년 계약 및 정관의 변경사항 등이 없더라도 원 등기 주관부서에 원래의 계약서, 정관 등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안국 외사관리부문에 회사 인장과 외사등기 필요

외사투자기업은 외사관리 등록이 해야 하며 이는 회사 인장(公章) 제작 등록과 함께 각 지방 공안국 외사담당부서에서 접수, 처리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업허가증(營業執照)사본
- ② 비준증서 사본

- ③ 계약서, 정관
- ④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 문서
- ⑤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회사의 각종 인장 도면(각2부)
- ⑥ 外事登記表

한편 출자준비를 위한 각종 등기절차 중 행정 수수료 ① 회사인감 각인비용 100元 ② 세관등기료 900元 ③ 세무등기료 500元 이외에, 현지 일간지에 회사 설립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중국은 의외로 광고비가 비싸서 최소규격인 7cm X 7cm 광고가 3,000元 정도에 달한다.

5. 외환관리 등기는 國家外匯管理局 지방분국에 신청

중국에서는 1980년 12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外匯管理潛行條例에 의거 중국내 모든 기업과 기관, 단체, 군대, 학교, 개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외환관리를 행하고 있다.

- ① 중국 영내에서의 외국화폐의 유통과 사용 및 개인적인 매매의 금지
- ② 중국 영내에서의 외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국가계획관리
- ③ 중국 영외의 외환구좌 개설 제한
- ④ 중국 영외에서의 외화 유가증권 발행 제한
- ⑤ 중국 영외로부터의 승인되지 않은 외화차관 도입 금지
- 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유로운 입출금과 국외송금 허용

이상과 같은 외환관리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내 외국 환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재지 관할 國家外匯管理局 分局에 외환관리등기(外匯管理登記)를 필하여야 한다. 國家外匯管理局 分局은 시급 지방정부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북경시의 경우 外匯管理登記時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기 수수료는 10元이다.

투자허가증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계약서와 정관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록카드(外商投資企業 基本情況登記카드)

6. 은행구좌 개설지점 선택에 신중해야

중국은 현재 3金(국가전산망확대)政策에 의거 금융부문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은행과 은행간의 전산화는 물론 동일 은행의 지점간에도 전산화가 미약하여 동일 은행의 구좌를 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외국기업의 경우 외환구좌와 현지 인민폐 구좌를 동시에 개설 운영해야하는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향후 융자 받을 것에 대비하여 구좌개설 은행과 지점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國家外匯管理局의 소재지 관할 분국에 외환관리등기를 필요하면 中國의 16개 외국환은행중 우리투자기업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여 國家外匯管理局 소재지 관할 분국에 보고하고 선정한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지점에 구좌를 개설한다.

다만 현재 中國내의 외국은행 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경, 심천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지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은행의 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중국의 외국환은행>

① 中國銀行 ② 中國工商銀行 ③ 中國人民建設銀行 ④ 中國農業銀行 ⑤ 交通銀行 ⑥ 中信實業銀行 ⑦ 光大銀行 ⑧ 廣東發展銀行 ⑨ 深圳發展銀行 ⑩ 福建興業銀行 ⑪ 招商銀行 ⑫ 華夏銀行 ⑬ 浦東發展銀行 ⑭ 中國投資銀行 ⑮ 民生銀行 16. 海南發展銀行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설하는 구좌는 ① 외화예금구좌 ② 인민폐 예금구좌 두가지 구좌이며 이들 예금구좌 개설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투자허가증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투자기업 기본정황 등기 카드, 구좌개설 신청카드
--

(사례 3) 외화 입출금시 수수료 징수와 외화 잔고 한도액 운영

인민폐구좌가 아닌 외화구좌에 입금시는 3%, 출금시는 5%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외화구좌 개설은행 및 지역도 원칙적으로 1개의 은행 및 지역에 한해 외화구좌 개설을 허용하고,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2개 이상의 구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외화 잔고 한도액을 정해 놓아 한도액 이상의 자금(수입자재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한 후 인민폐를 외화로 다시 환전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화사용에 있어 규제가 따르고 있다. 한도액 설정이 여유자금이 있을시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저금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없는 제약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책정하여 생산품을 수출하여 외환수지균형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외자기업의 수출의무비율 달성과 내수시장 진출 제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외화 한도액>

자본금 규모	한도금액
200만불 미만	30만불
200-600만불 미만	90만불
600-3,000만불 미만	450만불
3,000만불 이상	750만불

7. 세무등기

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稅務局 혹은 財稅局 등의 세무행정기관에 대해 세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500元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투자허가증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승인서 사본, 理事會 명단, 은행구좌 개설증명서

8. 세관등기

일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되면 최우선적으로 소재지 관할 세관에 海關(세관)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中國의 海關法상에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에 등록된 기업과 수출입업 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통관과 납세의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①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통관 ② 생산용 원자재의 통관 등의 업무를 위해 소정의 세관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소재지 관할 세관은 세관등록증명서(報關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통상 900元이다.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세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출자설비 명세서의 확인을 받은후 동 명세서와 계약서를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투자기업 수입화물과세면제 증명(中華人民共和國 海關對外商投資企業進口貨物征免稅證明)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등기시 통상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투자허가증서 사본, 영업허가증사본, 계약서 및 정관 사본, 세관등록신청서 (보관주책등기신청서)

(사례 4) 가공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계약건별 세관등기수책 발급 받아야

가공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공계약건별로 원자재의 수입 사용 및 제품 수출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인 세관등기수책을 세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7일이(성실업체의 경우 3일) 소요되어 원자재 수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천진의 경우 가공수출용 원자재 면세통관시 면세신청은 천진세관에서, 통관은 신행세관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사례 5) 세관간의 협조미흡, 내륙 보세운송에 어려움

가공수출용 수입원부자재는 중국 세관 규정상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업체들이 통관에 따른 추가인력 및 비용 부담을 갖게된다. 대련에 소재한 M사의 경우 네델란드로부터 가공수출용 자재를 수입하였다. 네델란드 대련간에는 직항로가 없어 대련이 아닌 북경세관을 통하여 내륙보세운송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북경에서 통관하고 내륙운송케 되었다. 이 경우 북경세관에 등록된 보관원(報關員 : 세관 접촉이 가능한 인원)만이 통관할 수 있어 불가피 대형 통관하므로서 시간 및 추가 경비가 소요되었다. 또한 보세운송이 허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내륙지역의 보세운송 목적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 동의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사례 6) 통관규정도 내부분건이면 미공개

K사는 대련에 사무소 개설을 위해 사무용품품을 한국으로 부터 운송중에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무소개설시 사무용품과 주재원의 이삿짐은 면세통관이 되어, 어려움 없이 통관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세관을 접촉한 결과, 며칠전 규정이 바뀌어 사무용품과 이삿짐도 과세된다고 한다. K사는 바뀐 규정을 본사에 보고하여 통관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변동된 규정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세관측은 정부 내부분건(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 여러 경로로 문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관은 요지부동이였으며, 세관장 면담시 대외유출은 어렵지만 K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 문건을 보여주기로 하는 것이였다. 이처럼 중국은 일반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도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지 진출 외국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9. 재정등기

세무등기와는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재정국이나 기타 재정 관리부서에 대해서도 재정등기(財務登記)를 한다. 재정등기는 통상 세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재정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대개 다음과 같다.

투자허가증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사본, 계약서 혹은 정관 재정등기 신청서

10. 상표등록은 현지진출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중국기업의 외국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불법사용이 빈번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외국기업의 상표를 중국내 먼저 등록하여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본래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현지 투자진출 이전이라도 의장, 특허 등 재산권에 대한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례 7) 인지도가 높은 한국상표를 중국업체가 도용 선등록

우리나라 시계 제품중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R사의 상표를 동사와 거래하던 중국업체가 상표를 도용 등록한 후 도용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현지에 유통시켰다. 정작 R사가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선등록한 중국업체의 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출원 및 관리에 있어 중국은 '57년 1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표대리부에 유일하게 외국 상표업무 대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개혁개방에 따라 추가로 4개사에 대리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들 법정대리업체들이 외국인의 상표출원 및 등록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중국내 영업권이 없는 한국업체의 경우에도 이들 기관을 통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상표출원관련 구비서류〉

○상표등록출원서 2부, 대리위탁서 2부, 상표도안 15매
(컬러상표에 대해 지정색을 사용한 채색 도안 15매외
흑백도안 4매 제출)

<국가지정 5개 대리기관>

1)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 상표대리부

- 주소: 北京市 復興門大街 1 號
- 전화: (010)6851- 3344 교환 1821 / 팩스: (010)6851- 0208
- 주요업무
 - 상표등록출원, 이의, 쟁의, 갱신등록, 양도, 상표권침해행위소송, 상표자문, 기업명칭등록 등 '92년부터 국내외기업의 위탁을 받고 상표감독업무 등 종합서비스 제공

2)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

- 주소: 香港 灣仔港灣道 26號 華潤大廈 45樓
- 전화:(00852)2828- 4688 / 팩스:(00852)2827- 1081,2827- 1172
- 주요업무
 - 특허,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출원:특 허, 상표, 저작권 침해행위 소송대리,지적소유권과 기타 경제관련 법률자문, 검색 등 서비스

3)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 駐北京辦事處

- 주소: 北京市 復興路 9號 東二樓
- 전화: (010)6851- 4363 / 팩스: (010)6851- 4364

4) 중국상표사무소

- 주소: 北京市 二七劇場路 3號
- 전화: (010)6832- 9996 교환 3712
- 주요 업무

- 상표등록출원대리, 상표이의, 쟁의안건대리, 상표소송 안건 대리, 검색, 문의 및 자문, 상표설계, 광고설계, 상표장식 설계, 외국기업명칭등록대리 등

5) 永新專利商標代理有限公司

- 주소: 홍콩 九龍 尖沙角東部 永安廣場 103室
- 전화: (00852)2739- 1818 / 팩스: (00852)2721- 3692
- 주요업무
 - 상표등록출원대리, 이의, 쟁의, 침해행위소송, 상표법자문, 상표권 행위소송, 기타 상표관련사항

6) 永新專利商標代理有限公司 駐北京辦事處

- 주소: 北京市 北三環中路 6號 10樓
- 전화: (010)6202- 8148 / 팩스: (010)6201- 6383

7) 上海專利事務所

- 주소: 上海市 中山北路 2650號 34- 35樓
- 전화: (021)5257- 1965 / 팩스: (021)5257- 2048
- 주요업무
 - 특허등록대리업무, 특허기술실시대리업무, 특허분쟁조정과 소송 대리, 특허문헌 서비스,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관련 업무

8) 上海專利事務所 駐北京辦事處

- 주소: 北京市 西直門 南大街 16號 3樓
- 전화: (010)5601- 8512 / 팩스: (010)5601- 3543

제6장 회계관리와 현지금융

1. 중국의 회계 원칙 및 세제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복식부기 기장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인민폐 또는 기타 화폐를 기장 본위화폐로 할 수 있으나 일단 확정된 기장화폐는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않된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연도말 채권잔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사내 감사를 선임하여 합영기업의 회계장부 정리상태와 재무상황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경리에게 보고한다. 외상기업에 대한 재무확인과 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명서, 연도 회계보고서, 청산회계보고서, 외환수지 보고 등 회계, 재무, 세무 관련의 제반 장부와 서류를 중국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례 1) 감사제도 도입등 명확한 회계 관리로 합자 성공

S사는 중국측과 합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합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는 감사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회사 설립 계약서와 정관상에 감사제도를 두도록 명시하고 회계업무는 반드시 사전에 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회계처리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회계상 발생될지도 모를 쟁방간 문제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중국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원칙이 있으나, 이에 부수되는 각종 세부명세표를 작성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회계방법을 추가 사용하는 세심한 관리로 상호 신뢰를 쌓게 되었다.

부가가치세(增值稅)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간접세인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增值稅)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의 물품 판매와 수입 및 가공과 수리보수용역(노무)의 제공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중국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납세의무자

- 재화를 판매하는자
-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공하는자
- 재화를 수입하는자

■ 세율

구분	과 세 범 위	세율
1	수출화물	0%
2	아래화물의 판매,수입시 - 양곡, 야채, 자연수, 식물식용유 - 상수도, 난방가스, 냉방가스, 온수, 석유액화 가스, 메탄가스, 주거용 석탄가스, 가정용연탄 및 연탄제품 등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농기구, 농업용 비닐	13%
3	가공, 수리, 자치등 서비스	17%
4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화물의 판매또는 수입시	17%

■ 면세,감세규정(부가가치세 면제항목)

- 농업 생산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농산물
- 피임약, 피임용구
- 과학실험용, 교육용 수입기기나 장비,설비
- 외국정부, 국제기구등이 무상원조한 수입물자 및 설비
- 임가공, 조립계약 및 구상무역시 소요되는 수입설비
- 장애인협회에서 수입한 장애인 전용물품
- 자가소비한 물품의 판매

- 외상기업의 경우 투자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기계설비와 수출품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 (96년 4월1일 이후 과세하였다가 최근 96년 4월 이전 비준받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비재 반입에 대한 과세유예기간 무기연기 조치)

(예 1) A사가 2,400cc 용량의 소형 승용차를 수입하며 세관신고 가격 200,000元, 관세 300,000元, 소비세 43,478元을 납부하였을 경우 증치세는?

$$\begin{aligned} \text{과세가격} &= 200,000\text{元} + 300,000\text{元} + 43,478\text{元} = 543,478\text{元} \\ \text{납부세액} &= 543,478 \times 17\% = 92,391\text{元} \end{aligned}$$

수출증치세(增值稅)

중국의 수출증치세는 수출품의 부가가치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7%이다. 중앙정부에서 도입하였으나 처음에는 蘇州 지역기업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도입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지방세무국에서 새 제도를 잘 시행하지 않았으나 97년 하반기부터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97년 2월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변경해 (종전의 매입부가세 범위내에서 인화된 환급율에 의거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대신, 수출화물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매입부가세와 차액이 있으면 환급 또는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한편 중국의 가공무역형태는 來料加工과 進料加工의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來料加工은 외국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임가공형태의 가공을 말하며 進料加工은 중국내 수출업체가 자기비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형태이다. 來料加工에는 수출증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進料加工에만 수출증치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수출증치세 부과는 수출량이 많은 외자기업에게는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이 되고 있어 향후 대중 외국인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계산방법

증치세액 = 내수판매물품X증치세율(17%)-[원자재(내자·외자)
구입시 기납부세액 - <수출화물FOB가격X(증치
세율- 환급세율)> + <수출물품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의 구성가격 X (증치세율- 환급세율)>]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중 일부가 수출증치세 부과에 따른 부담으로 進料加工을 來料加工으로 전환하거나 제3국 수출보다 현지 내수 시장 공략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합자형태의 회사로 신규진출해서 수출증치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중이다.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소득세는 1991년 제7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의거 9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납세대상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기업이다.

■ 납세범위

-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 중국 내·외의 제조, 사업활동 및 기타(이윤, 이자, 임대료 및 재화의 양도로 얻은 소득과 특허권, 독점적 기술의 제공이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얻는 소득과 비영업소득)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과세연도는 회계년도와 동일(1.1 12.31)하나 외국기업의 변경신청시 현지세무기관의 비준에 의거 변경가능하다.

■ 적용세율

- 33% : 일반기업소득세
(중앙정부 소득세 30%+지방정부 소득세 3%)
- 15% ① 경제특구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② 연안경제개방구, 경제특구, 경제 및 기술개발구에 소재하거나 에너지, 통신, 항만, 부두 또는 기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범위내에서 국무원이 정한 기타

지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얻은 기업

- 24% : 연안경제개방구, 경제특구 또는 경제 및 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구시가지에 설립된 제조성격의 외국인 투자기업
-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외국인 제조업 투자기업은 이익발생년도부터 2년간 소득세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한다.
- 농업, 임업, 목축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변방 저개발지역에 설립된 기타의 외국인투자기업 : 면제(2년)+50%감면(3년)+재감면(10년 15 30%)

■ 기업 수입금액중 공제(손금산입가능)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리비 : 외국기업의 관리비를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 이자비용 : 외상투자기업 생산·경영관련 합리적인 이자비용
- 기업차입금 : 고정자산의 구입과 설치·제조 또는 무형자산의 양수·개발등에 사용한 기업차입금
- 접대비
 - ① 연간 순매출액이 1,500萬元이하 : 순매출액의 5/1,000
 - ② 연간 순매출액이 1,500萬元이상 : 순매출액의 3/1,000
 - ③ 연간 업무수입총액이 500萬元이하 : 수입총액의 10/1,000
 - ④ 연간 업무수입총액이 500萬元이상 : 수입총액의 5/1,000
- 환율손익 : 건설중 또는 생산·경영기간중 발생한 환율손익
- 급여, 복리후생비 : 기업 근로자의 급여, 복리후생비

■ 기업의 수입금액중 공제불가(손금 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의 구입과 건설비용
- 무형자산의 양수와 개발관련 비용
- 자본화되는 이자금액
- 각종 소득세
- 위법경영으로 인한 벌금과 재산몰수에 따른 손실
- 자연재해 및 우발사고 손실중 배상받은 부분
- 각종 조세의 체납금 및 벌금
- 공익·구제성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 본사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 없는 기타 지출

■ 신고납부 - 1년에 4회 신고(중간예납 3회, 확정신고 1회)

① 중간예납

실제 이윤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납세소득액의 1/4 또는, 당해년도 목표이익의 1/4을 인민폐로 각 분기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② 확정신고납부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회계사의 장부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신고하여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 납부해야 한다.

중도 폐업할 경우 생산 및 경영중단일로부터 60일내에 당해기간내의 소득세를 신고,정산해야 한다.

■ 복수사업장의 소득세

- 중국내에 2개 혹은 2개이상의 영업기구를 설립할 때에는 한 영업기구를 선정하여 소득세를 합산신고,납부해야 한다.
- 합산신고시 각 관련영업기구의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영업기구별로 소득세를 구분하여 각각 세율적용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사업장별 손익이 교차되는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영업기구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별 소득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수입비율, 원가 및 비용비율, 직원수 또는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신고서류는 주 사업장 및 분점 관할 세무기관에도 각각 제출해야 한다.

■ 가산세

- ① 미납가산세: 세액 미납시에는 체납일로부터 개시하여 지체일 1일당 체납액의 0.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미등록, 미제출가산세: 세법에서 요구한 각종 등록을 특별한 사유없이 미룬 경우에는 1차시 5,000元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이행기일을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元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③ 장부불비 가산세 :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시에는 벌금(5,000元)을 부과한다.

■ 원천징수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중국내 이윤, 이자, 임대료나 기타소득이나 중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소득이 보유시설이나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기업에게 과세(세율 20%)되는 세금 원천징수는 매지급시마다 해야 하며, 5일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중국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이나 중국내에 거주지는 없으나 1년이상 체류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중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중국내 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해외여행기간(1회 30일미만, 누산시 90일미만)은 차감하지 않는다.

■ 과세소득

- 급여, 임금, 상여금, 연말 특별상여금, 이익배분액, 수당 및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금액
- 상업, 수공업, 건설, 운송 등의 산업에서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얻는 모든 소득이나 정부의 승인으로 수행하는 교육, 의료, 자문, 기타 용역 활동의 대가, 개인상공업에 종사하여 얻는 기타 소득
- 기업과의 계약이나 임대활동으로 월별로 수령하는 급여, 임금 등을 포함한 소득
- 저작권소득 : 저술,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에서 얻는 소득
- Royalty 소득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이나 기타의 실시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이자, 배당금, 상여금 : 채권자의 권리나 지분권의 보유로 발생한 소득
- 건물, 토지사용권, 기계, 장비, 운송수단 및 기타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로 얻은 소득
- 상금 및 복권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

■ 비과세소득

- 정부, 인민해방군,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공중보건, 환경보호분야의 업적에 대한 포상금
- 예금 및 국채, 기타국가가 발행한 재정증권의 이자
- 국가규정에 따라 받는 보조금 및 수당
- 관련정부나 노조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나 구호금
- 보험배상금, 군인이 받는 퇴직금
- 국가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취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수당
- 중국 법규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기타직원의 소득

■ 개인소득세 면제소득

- 외국국적 소지자가 비현금 또는 실비지급 방식에 따라 취득한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 외국국적 소지자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내·외 출장 보조비
- 위법·범죄행위의 신고·협조로 취득한 포상금
- 개인이 5년이상 사용한 가정생활용 주택의 양도소득
- 문화 및 학술교류 차원에서 중국에 파견된 학자·전문가의 2년 이내 급여소득

■ 급여 및 임금소득의 세율표

급수	과세대상 월별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	500元이하	5%	0
2	500元 2,000元	10%	25元
3	2,000元 5,000元	15%	125元
4	5,000元 20,000元	20%	375元
5	20,000元 40,000元	25%	1,375元
6	40,000元 60,000元	30%	3,375元
7	60,000元 80,000元	35%	6,375元
8	80,000元 100,000元	40%	10,375元
9	100,000元以上	45%	15,375元

※ 과세대상 소득 = 월급여(임금수입총액)- 800

※ 납부세액 = 과세대상 소득 X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급수	과세대상 연간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	5,000元이하	5%	0元
2	5,000元 10,000元	10%	250元
3	10,000元 30,000元	20%	1,250元
4	30,000元 50,000元	30%	4,250元
5	50,000元以上	35%	6,750元

※ 과세대상 소득 = 연간수입(생산,경영)총액- 원가,비용손실

※ 납부세액 = 과세대상 소득 X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예 2) D씨가 A사로부터 설계비 10,000元과 B사로부터는 자문비로 1,000元을 받았다. 이경우 개인소득세는 ?

☞ 설계비

과세대상 소득액 = 10,000 - 10,000X20%=8,000元

납부세액 = 8,000元X20%=1,600元

☞ 자문비

과세대상 소득액 = 1,000 - 800=200元

납부세액 = 200元X20%=40元

(예 3) 한국기업의 북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O씨는 월 30,000元の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때의 개인소득세는 ?

☞ 과세대상 소득액 = 30,000 - 800 - 3,200=26,000元

납부세액 = 26,000元X25% - 1,375=5,125元

영업세

중국의 영업세는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 판매 단위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비세·증치세(부가가치세)와 비교해서 징수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부담이 낮으며 3차 서비스 산업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세율은 일반적으로 3%와 5%이다.

■ 납세인: 판매행위시 과세용역과 재화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혼합 판매행위인 바 재화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와 개인 자영업자의 혼합판매 행위에는 증치세를 징수하고 영업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기타 단위나 개인의 혼합판매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

건축업의 경우 하도급시 주도급업자가 영업세의 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징수의무자가 된다.

■ 납세기한 :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액에 따라 5일, 10일, 15일, 1개월로 결정하며,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1개월 또는 분기단위로 계산한다.

※ 영업세 세목 세율표 ※

세 목	징 수 범 위	세율
1. 교통운수업	육로운수, 항공운수, 철도운수, 하역운송 등	3%
2. 건축업	건축, 설치, 수선, 장식, 기타 작업	3%
3. 금융·보험업		5%
4. 우편·통신업		3%
5. 문화체육업		3%
6. 오락업	노래방, 댄스장, 가라오케,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오락장 등	5-20%
7. 서비스업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사, 창고업, 임대업, 광고 및 기타 서비스업	5%
8.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의 양도	5%
9. 부동산판매	건출물 및 기타 토지 부속물의 판매	5%

※오락업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법규정(5 20%)내에서 적용세율을 결정한다.

- 과세방법 : 월판매액 200元에서 800元, 또는 1회(1일)판매액 50元을 최저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급지방 세무기관에서 상술한 규정 한도내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지역에 적용될 과세 기산점을 확정한다.

(예 4) 어느 가라오케의 당월 영업수입이 10만元일 때의 영업세는 얼마인가? 오락업의 영업세율은 5 20%지만 가라오케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세율이 10%인 경우

$$\text{산출세액} = 10\text{만원} \times 10\% = 1\text{萬元}$$

■ 면세규정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리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부양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 장애인이 제공하는 용역
- 의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학생의 과외서비스
- 농업 기계경작, 배수관계, 병충해 방지, 식물보호, 농목업 보험, 기타 관련 기술교육업무, 가축·축산·수생동물의 종자배양과 질병치료
-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람관, 도서관, 문화재 보호

단위의 문화활동의 입장수입, 종교행사의 문화·종교활동 입장수입

납세인이 면세또는 감세항목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단독 계산하지 않은 영업액에 대해서는 면세·감세할수 없다.

소비세

중국의 소비세란 사치품, 고급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소비세인 증치세의 보완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연초, 알콜성음료, 화장품 등이다. 중국내에서 과세소비재를 제조, 하청가공 또는 수입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국영기업, 집단 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합작기업, 기타의 기업, 관리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하며 개인이란 개인사업자 및 기타의 개인을 말한다.

- 과세방법 : 가격에 대한 정율세 방식과 종량에 대한 정액세 방식의 두가지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비품의 생산자를 납세인으로 하고 판매시점에 납세하여야 한다.
- 납세기한 :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의 세액크기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로 결정한다. 수입소비품은 세관으로부터 세금 납부증을 발급받는 다음날부터 7일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지점 : 과세대상 소비품을 판매하거나 자가생산·소비하는 경우에는 납세인의 계산장소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며, 위탁가공한 과세대상 소비품은 수탁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수입소비품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면세규정 : 과세대상 소비품을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나 국무원이 정한 수출제한 품목은 면세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취급하는 납세자는 과세

소비재의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납세하여야 한다. 만일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재를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세율을 전체에 대해 적용, 과세한다.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과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대금회수일이나 해당월의 첫날에 발표된 국가공인 외환율이다.

※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

과 세 품 목	부 과 범 위	과세 단위	세율 세액
○ 연초 1. 갑류담배 2. 을류담배 3. 엽연초	수입담배 포함		45% 40% 40% 30%
○ 알콜성음료 및 주정 1. 곡물로 빚은 맥주 2. 감자로 빚은 맥주 3. 황주 4. 맥주 5. 기타 알콜성 음료 6. 주정		ton ton	25% 15% 240元 220元 10% 5%
○ 화장품	화장품 꾸러미 포함		30%
○ 피부 및 모발보호제			17%
○ 귀금속, 보석, 옥	각종 금,은,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10%
○ 폭죽및 화약류			15%
○ 휘발유		litre	0.2元
○ 경유		litre	0.1元
○ 자동차 바퀴			10%
○ 이륜자동차			10%
○ 자동차 1. 일반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 배기량 1,000cc이상 2,200cc미만 배기량 1,000cc미만 2.. 경주용(4륜구동) 2,400cc이상 2,400cc미만 3. 소형승합차와 밴 2,000cc이상 2,000cc미만	22인승미만		8% 5% 3% 5% 3% 5% 3%

2. 중국에서 은행융자를 받으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융자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기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기업운영이 곤란할수록 자금수요는 커지지만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계속 빌려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측 파트너들은 융자받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이러한 장담이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 은행의 자금이 대부분 계획적인 정책성 자금으로 분배되어 금리에 따라서 융자되는 시장성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지의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가. 중국에서 융자받기 용이한 분야

중국에서 융자를 쉽게 받으려면 첫째, 중국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에 대한 투자항목이어야 한다. 즉 중국 내수시장에 팔기보다는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이어야 하고 노동집약적이기보다 자본집약적 산업이어야 하며 공해 발생 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이어야 한다. 둘째, 수익성이 높아야 하며 셋째, 확실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행은 예금증서, L/C 등이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담보물을 선호한다. 넷째,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자본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외국투자기업이 출자한 현금, 기계설비등의 등록자본이 실제 납입자본과 일치해야 한다.

(사례 2) 원자재 구입대금의 50%를 현지 은행 대출로 충당

스웨터를 생산하는 E사는 현지에서 원부자재 구매시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있다. 원부자재 구매 대금의 약 50%정도를 은행 자금을 활용하는데, 까다로운 대출 및 담보조건, 은행 담당자와의 관계 유지 등에 있어서 대출 받기가 용이한 편은 아니다. 현지 건설은행으로 부터 L/C와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고 있고 이자는 약 연12% 정도 수준이다.

나. 신중한 거래은행의 선택

외국투자기업은 대부분 거래은행에다 담보를 맡기고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일부 중국은행들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빌려줄만한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향후 융자받을 것에 대비하여 자금력이 튼튼한 은행을 선택하여 구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市이상급의 은행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여부의 결정은 주요은행의 외환대출처, 三資料(단독, 합작, 합자 기업담당) 등에서 하고 있다.

다. 융자신청 자격조건 및 절차

중국은행들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완비되어야만 융자대상 심사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격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중국자본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 등록자본과 실제 납입된 자본이 같아야 한다. 특히 실제 납입된 자본에 대해 회계사무소에서 확인받은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사회가 의결한 융자신청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항목이 정부관련부서의 허가를 득했어야 한다.
- 생산품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대외 주식투자 누계액이 순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융자신청인의 부채율이 은행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례 3) 중국측 파트너를 활용, 운전자금 현지 금융 이용

접착 테이프를 생산하는 B사는 한국과 중국이 50:50의 지분으로 설립한 합자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특기할 점은 합자 쌍방간의 업무 분장내용이다. 한국측은 기업의 경영 관리에 책임을 지고 중국측은 현지 관계를 활용하여 자금 차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중국측 파트너의 이러한 역할 분담에 힘입어 동사의 운전자금은 거래은행인 중국 농업은행을 통하여 현지 차입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중국은행이 선호하는 담보물

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담보물은 수요가 많아 쉽게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금증서와 차량이며 이외에 공장건물, 토지, 원자재, 공업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유가증권, 채권 등도 담보가 가능하다. L/C 신용장도 어느회사가 발행하고 어느 은행이 보증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 후 50% 융자해주며 사무용품에 대해서도 50% 대출해준다.

부동산은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환금성이 낮아 은행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담보물이다. 아파트보다는 고층건물이 선호되며 건물을 담보로 맡길 때 토지사용권과 건물이 분리되면 담보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례 4) 토지 담보 기피로 경영자금 수급에 차질

컴퓨터 케이블을 생산하는 J사는 국내 인건비와 원부자재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 시장확대를 위해 중국에 투자진출 하였다.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900천달러를 투자자금으로 대출 받았으며, 운전자금은 현지 외환은행 지점으로 부터 700천달러를 차입(LIBOR+1.5%, 6년)하였다. 원래 운전자금은 현지 토지를 담보로 중국의 은행으로 부터 대출코자 하였으나, 현지 은행이 토지 담보를 기피하고 담보 설정 절차 또한 복잡하여 결국 대출 받지 못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7장 적극적인 노무관리가 경영에 유리

직원모집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계약서 및 정관에 대개의 방법이 정해져서 명기되므로 이에 따라 직원을 모집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나 정관상에 노동 인사규약을 별도로 정해 직원모집 채용과 인사 규정, 상벌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직원모집은 ① 중국측 합자/합 작선의 기존 직원 인수 ②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추천자 채용 ③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주무부서 추천자 채용 ④ 삼자기 업 독자 모집 채용의 4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 드시 외자기업이 최종적인 채용여부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같은 권한은 중국의 관련법규에도 명시되어 있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부 관리직이나 기술직인원을 제외하고 는 일반생산직 직공은 신문광고와 광고전단 그리고 벽보를 통한 자체모집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벽보모집 광고가 생산직 직공모집 방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직원모집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에 필히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노동국에서 직원모집 지역을 정해 주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재지에서 직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외지인을 모집하는 경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인사담당 부서의 승인을 요하므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우리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직원 특히 생산직 직원을 모집할 때 고려할 점은 ① 신원확인 문제 ② 고용보장 문제 ③ 임금문제 ④ 복리문제 등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1. 노동계약은 관할 지방정부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야

삼자기업은 직원과 노동계약(勞動合同)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노동계약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우리 투자자측이 종업원 모집에 있어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의 조정을 하기가 힘들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임금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계약은 기업과 직공이 협상을 통해 쌍방의 권리의무에 대해동의한 내용을 표시한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노동계약은 직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工會(우리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직공들에 의해 선출된 직공대표와 기업측간의 협상을 통해 우리 나라의 단체 교섭에 상당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편의상 직공 개개인과 기업측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자기업 노동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동계약 체결 당사자 ② 직공의 직무 및 작업내용 ③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대우 ④ 교육훈련 ⑤ 근무시간 ⑥ 작업환경 및 안전위생 보장 ⑦ 노동보수 ⑧ 노동보험 제공 ⑨ 유급 휴일 및 휴가 ⑩ 근무수칙 및 상벌규정 ⑪ 기업측의 해고 및 제명규정 ⑫ 노동계약 기간 ⑬ 노동계약 기간의 중도해지 및 연장조항 ⑭ 노동계약 관련 분쟁처리조항 ⑮ 노동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2. 임금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成本工資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중국에서는 임금을 工資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보장적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는 임금 메카니즘으로 인해 임금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며, 임금수준의 결정은 단순한 기본급만을 고려해 결정해서는 곤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총액 즉 成本工資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내 삼자기업 임금은 대개 ① 실수령임금(實得工資) ② 복리비(福利工資) ③ 국가보조금(補貼工資)으로 구분된다. 실수령임금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재정국에서 정하고 있는 동종 국영기업 실수령임금 기준의 120%내지 1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전국을 평균적으로 놓고 볼때 삼자기업의 임금수준은 소재지 동종 국영기업 수령임금의 242%내지 272% 수준이며 삼자기업의 成本工資중 직공들의 실수령액은 평균 55% 정도이므로 삼자기업 직공들은 국영기업 직공들의 1.3배 내지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게되고 우리 투자자측으로서는 대략 이같은 수준에 맞춰 직공들 임금수준을 결정하면 무난할 것이다.

한편 수령임금과 복리비, 국가보조금의 구성내역은 중국내 각 지 역별로 다소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① 수령 임금은 기본급, 수당, 장려금으로 구성되며 ② 복리비는 노동보험과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③ 국가보조금에는 직공들 주택보조금과 물가보조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실수령 임금은 직공에게 직접 지불되고 나머지 임금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국과 재정국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지정된 은행의 해당기금 구좌에 납입토록 하거나 보험공사나 지방정부 재정국에 각각 납부토록 한다.

(사례 1) 간접인건비 성격의 보조기금 급여외 51% 초과

외국투자기업이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급여 외에 지방정부에 납부하거나 자체 적립해야 하는 간접 인건비 성격의 보조기금이 과다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퇴직기금(월급여의 25%), 실업보험료(월급여의 1%), 주택보조기금(월급여의 25%)등 총 월급여의 51%를 넘고 있으며 도시마다 산정기준, 징수기준 등이 상이하여 제도의 투명성도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도시를 포함한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보조기금으로 1인당 180元인 것을 90元만 내기로 합의하고 현재 실시중에 있기도 하다.

(사례 2) N사의 미납 양로보험금을 사회보험공사가 구좌에서 강제 인출

천진시는 '92.7월 “천진시 외국투자기업 중국 종업원 양로보험잠정규정”을 공포하고 외자기업으로부터 양로보험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다. 즉 외자기업은 매월 급여 지급일 후 5일내에 전월의 중국측 모든 종업원의 실수령 임금 총액의 30%를 양로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단독투자기업인 N사는 '94년 이래 중국측 종업원의 양로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해당區의 사회보험공사에서는 이 회사의 은행구좌에서 중국측 종업원의 양로보험금을 강제로 인출하였다.

'93.9월 국가 노동부와 전국 총공회 공동명의로 “기업 종업원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 보험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기일대로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구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요지이다. 이에 따라 천진시 홍교구 사회보험공사는 N사의 양로보험을 동사 구좌로부터 강제 인출하였으며, N사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중국 토자의 초기상담 과정에서부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혹은 노동인사국, 재정국을 통해 임금구성 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사업은 대개의 경우 노동집약 업종이므로 임금 이야말로 현지 투자기업 자금운용 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같은 계획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계약서, 정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대개의 경우 수출형기업이나 선진기술형기업 우대조치의 하나로 물가보조금 등의 국가보조금 기업 대납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로서는 이같은 우대조치를 적극 활용,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 요망된다. 즉 북경시같은 경우 수출형기업이나 선진기술형기업은 직공일인당 매월 30元の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된다.

3. 신원확인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의 신상명세서에 상당하는 招工登記表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국 혹은 노동인사국에 보고하여 야 한다.

직공신상명세서의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 | |
|---|
| ① 성명 ② 성별 ③ 출생년월일 ④ 주소 ⑤ 주택배정 유무
⑥ 특기 유무 ⑦ 개인의 간단한 이력 ⑧ 사회관계 |
|---|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초보적인 것으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실제 중국에서 직원의 신원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직원의 案과 戶口證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4. 중국 인사관리의 요체 案

案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특이한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의 신상조사 기록철로 행정기관이 아닌 학교, 기업이나 기관등의 소속단위에서 보관관리한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는 案은 평생동안 해당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 내용을 볼 수없고 만약 전직, 전근을 하면 案은 등기우편으로 군사우편망을 통하여 마치 비밀서류와 같이 새로운 근무처로 송부된다.

기업의 채용시, 학교 입학시, 외국유학시, 기관이나 조직에 가입 할시 등에는 해당 인사관리부서에서 案의 내용을 채용이나 입학, 가입 여부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인들은 案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5. 거주 이전 제한의 제도적 장치 호구제도

중국에는 案과 함께 호구관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戶口簿는 우리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내용이나 호구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기관 즉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공안국에서 관리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호구는 지역별로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로 나뉘고 이들은 다 시 각각 고정호구와 임시호구로 구분되는데 고정호구는 거주지에 호구부가 있는 경우로서 정식주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물가보조금과 주택 배정 등 사회보장혜택을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으나 임시호구는 방문등을 이유로 한 단기체류자에 해당되는 것을 거주지에서 국가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고정호구와 임시호구에 대한 구별과 함께 농 촌호구의 도시호구로의 이전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어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이전하려면 우선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案을 옮기 고 임시호구자로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호구의 이전이 가능한데 이동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호구 이전에 약 10,000元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농촌호구자가 도시호구로 이전하는 것은 직장 분배에 의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외자기업이 채용하는 직공들의 거의 대부분은 농촌지역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지역으로 몰려든 경우이므로 이들은 고정호구자가 아닌 임시호구자들이며 임시호구에 따른 임시거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공안국에 신청하면 심천같은 경우 6개월 임시거류증이 600元에 달하는등 적잖은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아예 임시거류증 조차 없는 예도 많다. 따라서 삼자기업이 채용하는 직공들은 임시호구자 뿐만 아니라 무호구자도 포함되게 된다.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이점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장점 : 임금중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국가보조금 (補貼工資)은 비농촌 고정호구 직공수대로 납부하게 되므로 임시호구자

나 무호구자 직공을 많이 채용하면 상대적으로 국 가보조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② 단점 : 원칙적으로 무호구자는 위법이므로 소재지 관할 지방 정부 공안당국과 이들의 채용 및 관리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전체적인 기업분위기를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철새같은 이직현상으로 생산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임시호구자나 무호자는 현실적으로 소재지에 거주할 주택이 없으므로 기숙사를 완비하여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6. 직원 해고조치 권한

직원의 해고조치는 중국에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비록 노동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직원을 해고 할 때는 ① 사전에 해당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한편 ② 만약 工會가 있을 때는 공회측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회측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③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혹은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토록 되어 있고 ④ 외국기업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때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함은 물론 나아가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직원의 해고조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측으로서의 직공들 모집과정에서부터 직공들의 신상 파악과 능력을 엄격히 선별하고 노동계약이나 노동계약에 부속된 직원근태규정상에 해고대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해고조치의 경우에도 해고 직공에 대해 보통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례 4) 공회의 동의하에 직원해고로 분쟁발생시 승소

K사는 해고된 직원으로 O로부터 제소를 받게 되었다. 평소 근무태만으로 회사측으로부터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하던 O를 공회의 동의하에 87년 9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해고통보를 받은후 O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12월 어느날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즉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O는 구두로 해고 통보받은 후 서면 해고통보를 받은 3개월간의 임금과 회사의 이익 배당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 K사측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사는 사전 공회의 동의하에 해고한 점과 O가 복직 신청을 한점으로 미루어 '87년 9월 해고 통보 조치가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7. 노동조합(工會) 관리

외국인 투자기업 공회설립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공회 법 제2조의 규정 에 비추어 외국인투자기업도 중국 영내에 설립된중국법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측도 직공들이 공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 동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의 각 지방별 외국인 투자기업 공회조례 중 하나인 上海市 中外合資經營企業工會條例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공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공회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직공들 이익을 반영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투자기업들의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사례 5) 현지문화를 존중하는 노무관리로 성공적인 투자

북경의 한국계 투자기업 T사는 서울 본사 설립 초기에 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한 경험이 있었다. 미국과의 합작을 하면서 동사의 회장이 절실히 느낀점은 현지 문화를 무시한 합작경영 특히 노무관리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동사는 중국과의 합작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권만은 한국측이 확고히 확보하되 노무관리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여 운영하고 공산당 간부를 과감히 채용 노무관리 책임을 맡기는 등의 조치로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적인 경영을 이루게 되었다. 성공적인 노무관리는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원이 되게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도 크게 공헌하였다.

(사례 6) 교육투자로 현지 투자기업 이직율이 한국 본사보다 낮아

중국 심양에 투자한 M사는 직원 교육을 중요시한다. 연수 및 개발비가 회사전체 경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나 사원교육은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장의 Q.C.D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00명 정도의 현지 종업원을 한국에 기술 연수 시키고 있으며, 한명의 이탈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공장 종업원들의 이직율은 1.5%이하로 한국 본사보다 낮으며, 생산품은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과 미국에 100% 수출하고 있다.

제8장 품질인증, 광고 및 판매

1. 중국의 품질 인증제도

가. 안전인증과 합격인증제도 운영

중국 국가기술감독국은 국무원의 10개 관련부서와 함께 1992년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전기제품의 의무적 감독관리에 대한 통보>를 발표하고, 1993년 제2차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전기제품 목록을 발표하였다. 전선과 케이블, 가전설비, 조명설비, 의료용 전기설비, 전기 용접기, 전자오락설비 등이 그것이다.

의무적 감독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기업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을 본격 생산할 때 합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① 국가 법률과 행정 규정상의 검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② 국가 우수제품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고품질 고가격의 원칙을 적용 유통할 수 있다.

【 중국의 품질인증제도 발전 과정 】

- 1982년 국제전기위원회(IEC)가 설립한 국제 전자부품 인증기구 IECQ가입
- 1985년 IECEE(국제전기제품안전인증기구) 가입
- 1987년 IECQ 전권임원국으로 피선
- 1991년 IECEE로부터 9개 기관이 전기제품안전인증 실험인가를 받음
 - 북경, 광둥, 광주가전제품, 상해전자제품, 상해전기도구, 상해전압전기기구, 상해전선, 광주전기안전, 북경라디오·TV제품 검사소

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국가표준 또는 기업 표준 요구에 적합하고 안정된 품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 품질 인증절차 】

- 외국기업은 기술감독국 또는 기타 인증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인증위원회에서는 검사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확인 기관에 제품 검사를 통보하고 신청기업의 품질 체계를 심사
- 합격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 사용 허가

외국기업에 대한 제품검사 및 품질체계 심사는 국가 기술감독국에서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의 인증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그 제품 및 품질체계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업무는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외국의 인증기구에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의 표준 또는 기업의 품질 체계 변화로 인증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인증 마크 사용이 정지된다.

다. 기술감독부문은 기업제품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다.

기업의 제품은 국가 기술감독부문의 검사·허가없이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기술감독부문은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함께 법의 의해 검사할 수 있다. 동일한 제품의 중복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문제는 기술감독국이 주관하고 공상행정부문이 이에 협조하며, 모조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문제는 공상행정부문이 주관하고 기술감독국이 협조토록 하고 있다.

라. 투자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재화의 검사와 가치검증

외국 투자자가 투자하거나, 그의 위탁에 의해 외국에서 구입한 재산은 상품검사기관 및 그가 지정한 자산평가기관에서 그 재산 가치

를 감정하고 감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감정증서는 투자자가 투입한 개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가 되며, 회계사무소에서 그 증서에 근거하여 외상 투자재산의 자금을 확인한다.

【 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

● 구비서류

- 신청서, 감정취지와 감정대상 및 요구사항 제시, 재산 명세서, 통관명세서, 구매계약, 송장, 보험증서, 보수비용 명세서와 설비기술 서류 등 자료, 비준증서, 계약서와 정관, 영업허가증 등

● 감정절차

- 서류심사 및 감정방법 수립
- 재산상태와 사용정도, 성능, 기술에 대한 분석표, 구매가격 또는 원가, 처분가치, 이익제고 능력등을 근거로 평가
- 현장조사, 기술검사 측정, 가치감정 등을 활용 감정

2. 광고와 판매

가. 광고와 품질은 중국내수확대를 위한 쌍두마차

중국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나, 현지를 경험한 업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국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사지 않거나, 사게되면 최고를 구매” 하는 성향과 명목소득상으로만 파악되지 않는 높은 가처분 소득으로 고급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특히 광고를 신뢰하는 중국인들 소비성향도 우리업체들이 중국 내수진출에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사례 1)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광고로 급성장

대만의 K사는 중국진출 3년만인 '95년말 매출액이 1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중국내 매출액이 9천만달러로 중국내 수판매가 중요한 매출원으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이회사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중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광고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 소비자가 광고를 맹신하

는 경향이 강한점에 착안하여 TV, 버스, 신문, 잡지, 매장 등을 통한 다양하고 대대적인 광고에 인색하지 않았다. 특히 11개 영업거점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광고전략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예를들어 항주의 대형 여객버스에서는 운행중에 희망가요를 들려주는 시설이 인기있는 점을 이용한 광고를 통하여 방송매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중국 각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등 끈질긴 판촉활동으로 3년 정도가 경과하자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매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사례 2) 가격이 비싸서 팔지 못하지는 않는다

내의생산업체 B사는 '94년 중국에 공장설립 후 생산품을 대부분 제3국에 수출하였으나, 대련을 통한 시범 판매가 호평을 받으면서, 중국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처음 중국내 판매를 기획할 때만 해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시범판매를 통하여 고급품을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의 구매패턴을 확인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품질과 함께 “광고비용에 비례하여 팔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광고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 예를 들어 외국브랜드인 C사의 제품은 위성 TV광고로 현지 고객의 인지도가 대단히 높다.

또한 일반소비재 구매성향 뿐 아니라 생산설비 구매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 특유의 집단 구매결정 시스템과 설비구입자금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고급 브랜드를 구조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례 3) 기계설비 수출 K상사의 중국시장 구매패턴 확인 사례

K상사는 우리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가지고 북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시회를 통하여 많은 바이어를 접촉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만을 가지고

중국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중요한 기계설비 구매시 집단구매 결정시스템에 의거 구매를 결정하고 정부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구입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구매결정에 참여한 인원들은 자신들이 구매결정한 설비가 사후에 고장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최고의 브랜드 구매를 선호하게 된다. 즉, 객관적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되는 설비를 구입하여 고장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고의 제품을 구매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할 수 있으나, 자신들이 판단해서 품질이 좋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객관적으로 품질 검증이 않된 제품을 구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키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구입자금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회주의적 기업체제 또한 설비구매시 가격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정당한 광고활동과 그 발전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확립하며 시장경제의 창달을 목적으로 <중국광고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허위광고나 과당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사례 4) 과당광고로 제재를 받은 사례

북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장안로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그 상징성이 매우 높다. 이 장안로를 지나다 보면 수 많은 우리 기업들의 입간판 광고가 거리를 매우고 있어 공격적인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입간판 광고중 OO그룹의 광고내용에 대해 중국정부가 과당광고 판정을 내려 부정적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내용인 즉, “중국 세계의 중심, OO 기술의 중심”이라는 광고내용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OO그룹이 기술의 중심은 더욱 아닌 과당광고이므로 입간판 철수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중국정부가 내심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여러가지로 추측만 할 뿐 이지만, 이로 인해 OO사가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제품명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식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매체이다. 특히 표의문자인 중국어를 적극 활용한 제품 이름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카콜라와 펄시콜라를 들 수 있다.

(사례 5) 현지화된 독특한 상표명으로 인지도 제고

코카콜라의 중국어 표기는 可口可樂(크어 커우 크얼러 - “마시면 즐거움이”)이고 펄시콜라는 百事可樂(바이 스 크얼러 - “만사가 즐겁다”)이다. 절묘한 음차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우리의 E-MART와 엘칸토도 중국어의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엘칸토의 중국어 명칭은 愛看特(아이 칸 터 - 아주 보기 좋다)이고, 이마트는 易買得(이 마 이 더 - 사기 아주 쉽다)이다.

나. 지역별 상이한 시장형성 단계에 대처 필요

일반적으로 중국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보기 쉬우나 각 지역별로 상이한 시장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각 지역별 시장특성에 맞는 판매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이 큰 격차를 보이는데 광둥성의 경우 1인당 연간소득이 7,445元인데 반해 내몽고 자치구는 2,874元이다. 지역별 유통구조, 상관행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형성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사례 6) 수입시장 형성 초기 조기진출과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 진출 성공

A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점유율이나 인지도 면에서 최고의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성도(成都)를 중심으로 한 중국 사천성에서 이 회사제품은 최고의 외국브랜드로 인식되면서 시장 개척에 성공하고 있다.

중국 내륙지방의 경우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반면 어떤제품이 세계 유명브랜드인지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A사는 현지의 고급백화점을 통한 판촉전과 매장 확보 등 고급화 전략에 의한 시장선점이 주효하여 현지에서 제품의 성가를 높이고 있다.

다. 고조되는 소비자 권리의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공급자시장에서 중국의 소비자들은 수요되는 제품을 확보할 수 만 있으면 되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상품 보호심리와 결합된 소비자 권리의식으로 외국기업 상품에 대해서는 사소한 하자도 자국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례 7) 광고내용과 제품기능 불일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중국인 소비자 N씨와 X씨는 일본S사 TV제품 카타로그와 실제 기능상에 차이를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타로그상에 나온 RGB단자가 실체는 없고,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중국어 문자방송 수신은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S사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려 한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신상의 손해를 주거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측은 소비자가 100% 대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100% 상품기능을 향유하여야 하며 주관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S사는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리를 통해 S사는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23회에 걸친 협의에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상보에서는 이 사건을 “중국의 소비자가 외국 대기업을 소송한 예가 처음은 아니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법률에 따라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보도하였다.

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장애 요인

1) 외국기업의 유통망 진출 제한

1995년 6월 20일 발표된 <외상투자방향지침 잠정규정>에 따라 상업성 도,소매업은 외상투자 제한업종으로서 외상 독자경영은 허가되지 않으며, 합자 또는 합작 경영의 도, 소매업은 설립할 수 있으나 현재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속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유통기업은 15개사 지방정부의 허가를 득해 추진 중인 것을 합치면 약 6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 유통업체의 진

출을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백화점내 매장 임차형태로 신세계 등이 진출하고 있으며, 합작경영 형태로 E-MART가 유일하게 진출하고 있다.

2) 어음제도, 부도개념이 없어 미수금 누증

중국은 어음제도가 없으며, 수표도 부도개념이 없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 어느 한 업체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련 제품 유통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미수금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三角債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수금 누증이나 체불을 들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판매가 활발하여도 미수금이 체불되거나 누증되면 경영상에 결정적인 애로가 된다. 특히 시장이 협소할 경우에 비해 광활한 시장에서 외상대금 회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사례 8) 외상대금 회수 어려움이 내수진출 최대 장애

중국에 투자한 S사는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특수시멘트는 기존 중국에서 외장타일 접착이 떠붙이기 공법에 의존하던 것을 압착공법으로 바꿀수 있게하여 공기를 단축시키고, 건축물을 영구 보존하는데 월등한 효과가 있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92년 이후 중국의 건축 붐으로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품 판매는 거의 외상거래인데 외상매출 대금 회수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금회수는 장기분할 방식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어음 거래 제도가 없어 미수금이 누증되거나 체불되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 9) 판매조합 형성으로 미수금을 예방하고 내수판매 확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미수금 발생 문제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삼각채 문제와 거래상 관행처럼 되어버린 미수금 발생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Y사는 이러한 미수금 발생문제를 예방하고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일종의

판매조합 형성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내수 판매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동사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약20만元の 조합 가입비를 징수하고, 이 가입비 범위내에서 물품을 공급한다. 일종의 현찰보증금이다. 동사의 제품이 우수하고 현지에 많은 수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매 방식이 가능하였다.

(사례 10) 대형 백화점과 거래시 대금회수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의 백화점 매장은 매출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과 면적당 일정액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B사는 수수료 매장형태로 대형 백화점 8곳에 진출하므로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미수금 문제 발생없이 원활한 대금회수를 하고 있다. 신용이 좋은 백화점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야 하며, 그러므로서 지불 조건을 비롯한 제반 거래조건을 리드할 수 있다.

참고로 대형백화점에 진출하려면 상품이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다는 근거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수입면장,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등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외자기업의 수출입 관련 서류 신청

가. 외자기업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수출입허가증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에서 총괄하며, 그 산하의 쿼타 허가증 관리국, 각성급 대외경제무역부문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최초 허가증 발급 신청시는 수출입허가증 신청서외 기업의 계약서, 정관, 기타 발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한다. 허가증을 신청한 외상기업은 생산개시 후 매년 9월에 현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다음연도 수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시 주요 심사내용은 신청자 자격에 대한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수출입 유관서류의 진위성, 수출입쿼터 관리품목은 수출입 쿼타 증명의 유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의 유무, 수출입 가격관리품목인 경우 그 가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3일 이내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구와 신청절차

중국은 1992년부터 <중국화물원산지 규칙>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전국의 원산지 증명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과 집행을 하고 각 성급 지방정부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에서 관할지역 원산지 관리업무를 협조한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각 지방 수출입상품검사기구,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분회, 기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자격자는 중국 국경내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역경영권을 소유한 자, 來料加工, 來樣加工, 來件裝配 또는 구상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외상기업이다

신청자는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대외무역경영권 증명서와 수출화물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원산지 등록을 한 기업은 매번 수출화물 통관신고 3일전에 원산지 신청서,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 G.S.P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는 어떠한가

G.S.P원산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구비한 정부의 증명서류로서 국가 상품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증명서는 국가상품검사국에서 각지에 설치한 상품검사기관에서 발급한다. 신청기업은 우선 수출업무경영권 증명서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기타 관련서류를 현지 상품검사기구에 제출하여 <G.S.P원산지 증명서 등록등기 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에 의거 <G.S.P.원산지 증명신청서>와 <G.S.P. 원산지증명서(FORM A)>, 수출상품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갖추어 <G.S.P.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입소재가 함유된 상품은 수입소재의 사용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제조 원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來料加工, 進料加工 방식으로 생산한 수출상품은 재료 수입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필요한 경우 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 통관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G.S.P.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 】

-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중국기업
- 중외합자, 합작과 외상 독자기업
- 외국기업과 상사의 주중국 대표기구
- 來料加工, 來樣加工, 來件裝配 및 기타 구상무역을 하는 기업
- 관광상품을 경영하는 판매부서
- 국제 경제, 문화 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전시품 견본품 판매 관련 업체

화물수출운송 5일전에 화물소재지 상품검사기관에 신청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사후 발급 신청시에는 통관신고서, 선하증권과 운임청구서를 첨부하며 상품 검사기관에서는 증명서에 <사후 발급(后發)>이라는 도장을 날인 발급한다.

【 중국에 G.S.P.대우를 제공하는 국가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폴란드,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사례 11) 수출 쿼터 할당문제로 합자실패 사례

G사는 중국과 홍콩이 합자한 의류 가공 수출기업이다. 합자계약서 상에는 중국측의 수출쿼터를 합자기업측에 할당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외경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취득하였다. 영업개시후 생산은 양호하여 전국 외화획득 선진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영시작 9개월 후 중국측은 합자기업에 수출 할당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할당 유상양도 조항을 수정하자고 하였다. 국가에서 외자기업에는 수출쿼터를 할당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중국측은 합자기업의 상품을 압류하고 생산오퍼를 취소하였으며, 중국측이 합자기업 명의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합자기업측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홍콩투자자는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중재 판정결과 합자계약을 유효하며, 중국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경제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은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과는 반대로 강제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제9장 소송과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분쟁처리와 소송

합영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체협상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느 일방은 〈중국 민사소송법〉,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에 따라 중국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인 주소지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며 분쟁안건의 경중에 따라 하급, 중급, 또는 고급 인민법원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할권 문제는 피고인 주소지 지방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다.

제소자가 소장과 관련 서류를 피소인 인원수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선불하면, 법원이 심사를 하여 안건수리 통지를 하게 되는데, 제소자는 이 때 소송 신청서에 제소인 및 피고인의 이름, 주소,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성명, 직책, 소송 사유나 요구사항, 관련 근거 등을 기재한다.

■ 소송 절차

- 1) 인민법원은 안건수리 후 5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소장 사본을 송부한다.
- 2) 법원의 접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답변장에는 답변사실과 이유 및 제소인의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피고인의 답변장을 수리한 법원은 5일 이내에 그 답변장을 제소인에게 송부한다.
- 4) 피고인이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심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이 소송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답변장 제출기간 이내에 이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게 된다.
 - 심사결과에 따라 그 안건을 관할 인민법원으로 이첩하거나 원 접수법원에서 소송을 처리한다.

- 5) 피고인은 응소과정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장은 항소사실, 항소이유와 요구를 명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첨부하여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중국 민사 소송법〉에 따라 재산보전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산보전 신청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담보물이 없을시 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제소인과 피소인 모두 1 2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은 위탁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그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리소송인의 변경, 해지 또는 위임사항 변경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소송과정에서 제소인은 소송요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소송요구에 대하여 인정 또는 반박할 수 있고 항소권을 가진다. 제소인과 피고인은 법원이 통지한 시간과 장소에 출정하며 제소인이 통지를 받고 출정 거절 또는 법정허가 없이 출정도중에 이석할 경우에는 제소철회로 처리되지만 피고인의 궤석판결은 가능하다.

소송 진행중에 쌍방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했을 경우 제소인이 제소철회를 신청하며, 법원의 조정으로 협의에 도달했을 경우는 법원에서 조정서를 작성한다.

당사자가 초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는 법정기한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의 판결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재상소할 수 없다.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2. 해체 및 청산절차

중국법에 따라 중국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규칙(96년 7월 9일 시행)에 따라 청산할수 있다.

■ 청산가능사유

1. 경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으로 심각한 결손을 초래하여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로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된 경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쳐 법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6. 외자기업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상기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외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법에 규정된 청산절차,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원칙에 의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청산을 진행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자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청산규정에 따르나 일반 청산절차에 따를 경우 어려움이 야기되거나 기업폐쇄와 해산명령에 의해서 청산할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특별 청산절차에 의할 수 있다.

가. 일반청산

1) 청산기간

외자기업의 청산개시일은 경영기간이 만료된 날, 기업심사인가기관이 기업해산을 인가한 날,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종지를 판결 혹은 판정한 날이다. 청산기간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인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180일을 초과할수 없다. 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청산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기간만료 15일 이전에 기업심사인가기관에 신청하여 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자기업은 청산기간중 새로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2) 청산조직

외자기업 의결기구에서 청산개시일 15일이내에 위원 3명 이상의

청산위원회를 구성, 청산을 진행하며 청산위원은 기업의결기구의 구성원 혹은 관련전문가를 선임할수 있다. 청산위원의 직무는 첫째, 기업 재산정리, 기업대차대조표 작성, 재산목록 편성, 청산방안 수립 둘째, 채권인에 대한 청산공고 및 서면 통지 셋째, 청산기업의 잔여업무 처리 넷째, 자산평가서와 산정기준 제출 다섯째, 미납 세금 완납 여섯째, 채권, 채무 처리 일곱째, 채무청산이후 잔여재산 처리 여덟째, 기업을 대표한 민사소송활동 참가로 세분된다.

3) 통지 및 공고

외자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업심사인가기관,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기기관, 세무서, 주거래은행 등에 기업명칭, 주소, 청산사유, 청산개시일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하며, 국유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재정부서에도 통지해야 한다. 청산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연락가능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통지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채권자를 위해 60일이내에 중앙 주요 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최소 2회이상 공고한다. 1차공고는 청산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한다. 채권자는 규정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며 금액과 증빙자료를 동시에 제출한다.

4) 채권, 채무상환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등기 및 심사후 채권심사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한다. 채권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와 외자기업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소송기간과 중재기간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재산잉여 혹은 손실과 매각처분, 상환불능채무, 청산기간의 이익 혹은 손실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기업의결기구에 원인설명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청산손익으로 계상한다.

청산자산중 ① 관리, 매각처분 및 기업청산 자산분배에 필용한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비용 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기타 비용을 우선지불한 후 ① 임금, 노동보험비 ② 국세 ③ 기타 채무를 상환한다. 청산비용 지불과 각종 채무상환이 완료된 후 잉여자산은 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법률, 행정법규, 기업계약서,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기업 청산과정중

채무상환금이 부족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청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청산개시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발생한 ① 기업자산의 무상양도 ② 기업자산의 비정상적인 염가매각 ③ 당초 자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자산담보제공 ④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⑤본 기업채권의 포기 등은 무효로 간주된다.

5) 청산자산의 평가기준

- ① 기업계약서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기업계약서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외쌍방의 투자자가 협의결정하며, 동시에 기업심사인가기관에 인가를 신청한다.
- ③ 기업계약서와 정관에 규정이 없고, 중외 쌍방투자자가 협의하지 못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국가유관규정과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기업인가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인가받는다.
- ④ 법원판결 혹은 중재판정으로 기업계약을 중지하고 동시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 판결 혹은 판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청산자산에 대한 매각시 동등조건하에서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구매권이 있으며,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구매한다.

(사례) 중국측 파트너의 청산 기피로 공개 경매

천진S 전기유한공사는 1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세탁기를 생산하는 합자기업이다. 중국내수시장을 위주로 제품 판매를 하였으나, '88년 이후 중국의 경제조절 정책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89년 가을 폐쇄를 결의하고 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해산신청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해산 공고가 나지 않았다. '90년 3월에 시대외경무위로 부터 비준은 얻었지만 중국측 파트너가 공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산절차를 밟는데 있어 중국측이 채권,채무 관계를 1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산 평가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직원 처우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중국측 파트너는 합자기업 폐쇄가 자신의 정치적 배경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해산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이 회사는

외자기업으로 파산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경매에 들어가 중국은행 천진분행에 1,440만元に 낙찰되었다.

6) 청산종료

청산위원회는 청산방안에서 정한 업무의 종결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인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당초 등록기관의 등기말소 및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청산보고서 필수내용

청산 원인,기간,과정/ 채권, 채무 처리결과/ 청산자산 처리결과

나. 특별청산

특별청산 개시일은 기업심사인가기관이 특별청산을 인가한 날이나 법에 의거 기업의 폐쇄결정을 내린 날이 된다. 기업심사인가기관이나 기관이 위임한 부서에서 중외투자자, 유관기관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에는 주임 1명을 선임하여, 특별청산기간중 기업의 법정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청산위원회는 기업의결기구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청산위원회는 기업의결기구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청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다. 법률책임

청산기간중 새로운 기업 경영활동 혹은 청산의 통지 및 공고에 관한 규정위반, 기업자산의 임의처분과 청산결과보고 및 기업등기 말소, 영업허가증 취소에 관한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처분과 함께 벌금(1萬元 10萬元이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청산법의 규정에 위반된 범죄행위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